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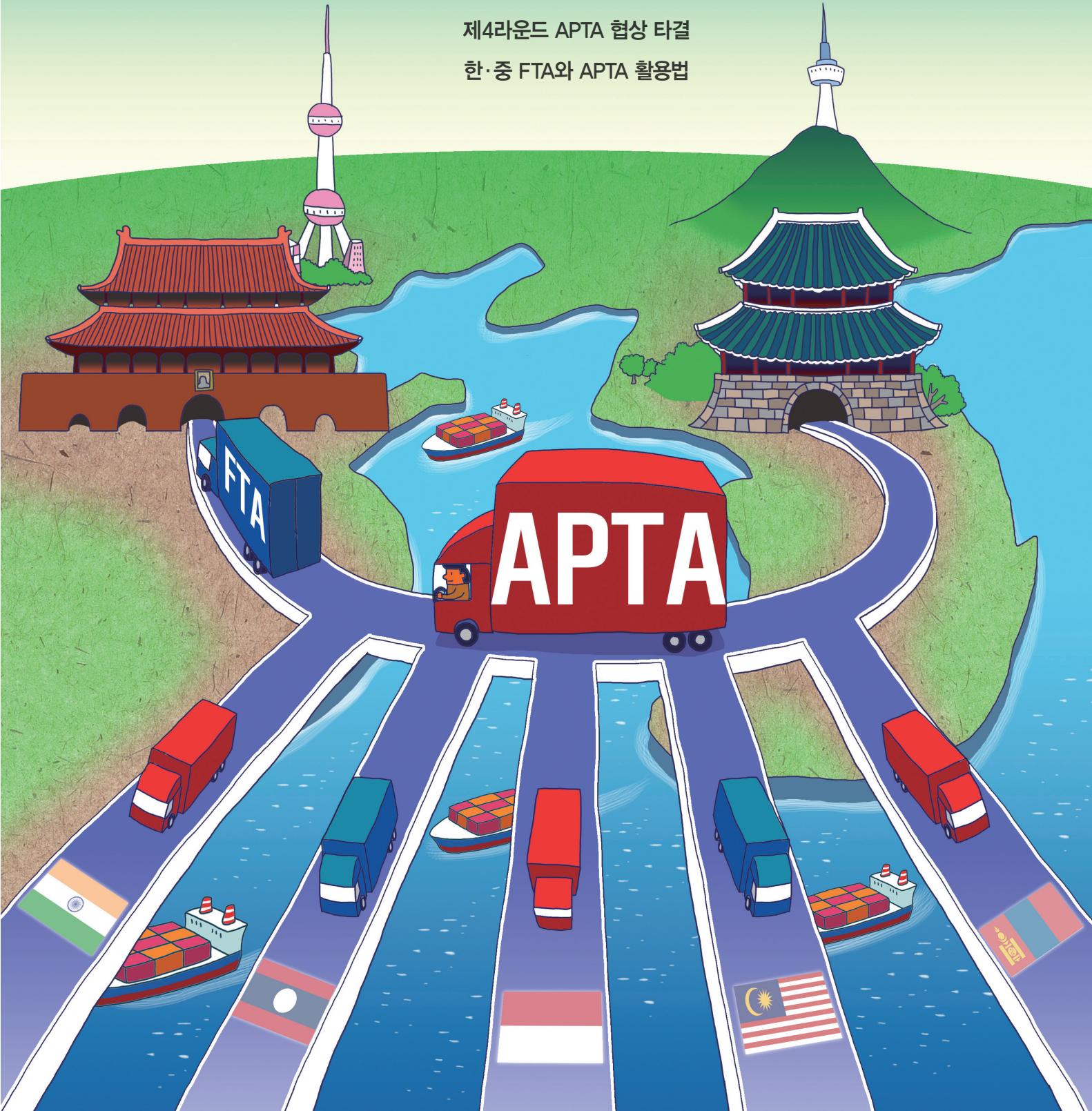
# 함께하는 FTA

June 2016 vol.49

APTA&FTA

제4라운드 APTA 협상 타결

한·중 FTA와 APTA 활용법



# 한중FTA 활용, 1380 차이나데스크에 다 있다!

'차이나데스크'는 한중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 한중FTA 활용, 차이나데스크 상담은?

국번 없이 1380

<http://fta1380.or.kr>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층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한국무역협회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대한상공회의소  
Daehan Sanggonghui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ssociation

글 김선녀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이종현 사무차장

## 한중일 FTA는 3국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한중일 3국의 상호보완성과 잠재력은 세계적으로 무척 큰 의미를 가집니다. 3국의 성공적인 FTA 체결은 그 시너지 효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이하 TCS)은 2009년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상설 사무국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정상 간의 대화 이후 2011년 9월 정식 출범한 3국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서울에 그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중일 3국의 협력 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창립되었다.

TCS의 이종현 사무차장은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은 종교와 문화는 물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매우 가까운 이웃이지만 공통점이 많은 만큼 경쟁적인 요소도 많으며, 역사적으로 대립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세 나라는 가까운 만큼 여러 분야에서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도 무척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상대국에 대

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3국의 GDP가 전 세계의 1/5을 차지할 만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세 국가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또한 세 나라 모두 현재 고령화와 저성장이라는 공통된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만큼 3국의 경제 협력은 더욱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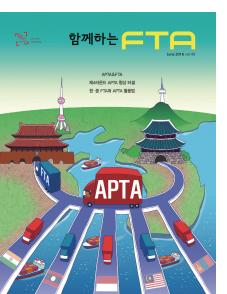
지난 4월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주체로 제4차 한중일 FTA 세미나가 열렸고, 한중일 경제장관회의 및 정상회담 등 TCS는 현재 3국의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다양한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세 나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국 협력의 핵심은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현재 3국의 첨예한 경쟁 구도를 선의의 경쟁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협업을 통해 공동의 최종 목표를 위해 노력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한중일 FTA의 성공적인 체결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❶



# Contents

June 2016 vol.49



## COVER STORY

지난 12월 제4라운드 APTA 협정이 타결되었다. 이중 우리와 FTA를 맺은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시 두 가지 협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중국과의 수출에 있어서 두 가지 중 유리한 세율을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6년 6월 1일(통권 49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FTA People

- 01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이종현 사무차장

## Issue Focus

- 04 FTA 활용지원 혜택  
06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대응 사례집 발간  
08 201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10 Global FTA News

## FTA Cartoon

- 12 한·중 FTA로 한 번! APTA로 한 번 더!  
안중만

## Cover Story

- APTA & FTA  
14 APTA 개요  
16 한·중 FTA와 APTA 활용  
이민선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 Special Report

- 18 TPP의 이 시각 현재 온도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20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 II) 발효  
22 현장의 목소리  
24 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

## FTA & Company

- 26 2015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탐방:  
태경식품(최우수상)

## FTA Study

- 28 스위스 제네바 WTO 유치 비화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30 한·중 FTA 비관세 장벽 이해 및 활용  
김기현 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32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⑬ 중국 지식재산권 계약 – 중국 OEM 계약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34 FTA 사후검증tip:  
효과적인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작성법⑤  
유영웅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FTA원산지지원실)  
36 실전 FTA 활용 노하우:  
한·뉴질랜드 FTA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②  
유영진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FTA활용지원실)

## Art & Culture

- 40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⑯ 변신인형

## FTA News

- 42 한·이스라엘 통상 차관 면담 외

## FTA Square

- 44 FTA 정보&독자의 소리



글 김은진 기자

사진 한국무역협회

## FTA 활용지원 혜택

## FTA 활용 시 필요한 업체 정보, 이제 안심하고 보호받자

관세청에서는 FTA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 사업'과 '자유무역협정 기업지원 업체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 등 다양한 제도를 시범실시했다. FTA 활용에 있어 기업의 중요 정보 노출, 증명서 오류로 인한 피해 등의 불안 요소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안심하고 FTA 활용에 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찾아가는 서비스로 수출기업의 FTA 활용 개척**

###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 사업 실시



한·중 FTA 발효 100일을 맞아 관세청은 대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 증진과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원산지 사전확인이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세관이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이다.

시범사업에는 FTA 미활용 업체 25개가 참여했고, 이 중 18개 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사전 판정되었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여부와 원재료 제조공정 등을 직접 확인하고, 원산지관리 시스템도 점검했다. 사전 판정된 업체들은 앞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한·중 FTA 활용에 따른 세율 인하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FTA를 활용한 무역에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특혜 세액의 추징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이번 시범사업의 의미를 두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그간 복잡한 FTA 관련 규정과 더불어 수출물품과 원자재의 품목분류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업을 통해 한·중 FTA

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중국 수출전망이 매우 밝아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등이 발효 2년차에 원산지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중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우리 5개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발효 초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 요건이 주요 검증 대상이므로 FTA 활용 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데 등 우리 수출물품에 대해 양국 간 세번(HS)을 다르게 결정한 사례도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 세관이나 우리 수출기업의 한·중 FTA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현지에 파견된 차이나 협력관을 통해 통관애로 사항을 알려 줄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시범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관세행정을 적극 발굴·시행할 방침이다. 맞춤형 FTA 상담, 검증대응 지원 등 FTA와 관련된 모든 애로사항은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 센터'로 문의하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5월 16일부터 FTA 상담 및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 보급 등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원산지 검증 등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 기업지원 업체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FTA 집행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기업에게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원산지 검증 업무도 담당함에 따라, 기업지원 과정에서 얻은 업체정보가 원산지 검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업체의 우려가 있어왔다.

**〈사례1〉**

FTA 상담 요청을 받고 A사를 방문한 세관직원이 정확한 원산지판정을 위해 원자료명세서(BOM) 등 원가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자, A사는 이러한 정보가 원산지 검증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자료 제출을 꺼림에 따라 세관직원은 정확한 상담을 해주지 못하고 돌아왔다.

**〈사례2〉**

B사는 관세청이 보급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설치했으나, 시스템에 저장되는 원가정보 등을 세관이 원산지검증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결국 FTA 활용으로 인한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FTA를 활용하는 기업이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은 불안감 없이, 보다 안심하고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수출업체가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등 원산지관리업무를 정확히 함으로써,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업체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자료명세서(BOM), 제품생산공정설명서 등 구체적인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원산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기업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업체정보를 내부적으로 원산지 검증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 지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들이 더욱 안심하고 세관의 FTA 활용지원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❶

글 김은진 기자  
사진 한국무역협회



##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대응 사례집 발간 지식재산권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라

지난 4월 KOTRA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대응 사례를 엮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상표 등록에 관련한 '창출', 지재권 보호와 관련한 '보호'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으며 해외 지재권에 대한 Q&A 형식의 팁과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법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 Part 01 창출

#### 현지 네이밍을 활용하라

기업명 마이하우스  
업종(주요취급품목) 제조업(침구, 커튼)  
국가 중국

마이하우스는 지난 1999년 설립된 침구 및 커튼 전문업체로 제품 기획과 디자인부터 제작, 유통에 이르기까지 자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연 매출 약 50억 정도인 중소기업이다. 그동안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을 준비해왔고 2016년 4월 1일 북경에 영업사무소를 오픈할 예정이다.

#### 중국 업체의 선등록으로 상표 사용 불가

마이하우스는 지난 2011년 상해 전시회에 참가한 이후 중국 업체가 대표 상표인 MYHOUSE를 선등록해 중국 진출 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중국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와 T-mall에서 등록 상표를 이용해 제품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타오바오 매출 우수 상표로 지정되기도 했다. 마이하우스는 해당 업체에 상표권 이전을 요청했으나 자신들의 브랜드라 주장하면서 거부했다. 중국 진출을 위해 자체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한 마이하우스는 KOTRA 칭다오 무역관의 도움으로 상표 등록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 등록한 상표는 THEHUUZ(24류, 35류), 舍秀织(24류, 35류), 迈豪思(24류, 35류), MYHOUSE(35류). THEHUUZ 상표의 중문명인 舍秀织를 작명할 때도 정도 IP-DESK의 지원을 받았다(舍秀织는 중문 발음으로 'she xiuzhi'이며, 영문 상표 THE HUUZ와 발음을 비슷하게 만들었고 또한 舍는 '집', 秀는 '아름답다', 织는 '방직하다'라는 뜻으로 합쳐서 '집을 아름답게 하는 방직품'이라는 뜻을 지녔다).

#### 시사점

마이하우스는 IP-DESK에서 상표등록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상표등록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현재 국문 상표에 대한 등록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상표등록을 진행할 경우에도 코트라 및 중진공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현지인들에게 친숙한 중문 명칭을 사용하여 현지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Part 02 보호

#### 침해 업체를 보았다면 정보부터 쟁겨라

기업명 나스켐  
업종(주요취급품목) 제조업(스포츠용 및 캠핑용품)  
국가 독일 및 유럽

지난 1990년 설립된 나스켐은 캠핑용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연 매출은 약 73억 원, 종업원 수는 27명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에도 힘써 현재 다수의 특허 및 상표·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 독일 전시회에서 디자인권 침해 업체 발견

2015년 7월 독일의 프리드리히하펜 아웃도어 전시회에 참가한 나스켐은 그곳에서 CAO Camping이라는 프랑스 업체가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프랑크푸르트 IP-DESK에 대응 방안을 문의해왔다. 나스켐은 유럽에 해당 디자인권을 보유 중으로, CAO Camping의 제품은 그 디자인을 카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IP-DESK는 나스켐의 해당 디자인 등록 서류를 확인한 뒤 해당 전시회가 열리는 지역의 세관과 접촉을 시도해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문의하고 프랑스 업체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관할지역 세관에 해당 서류를 송부하였는데, 세관에서는 이를 디자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CAO Camping의 부스를 방문해 해당 제품을 입류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활용

이 사례는 한국기업이 지재권 보유에 그치지 않고 권리를 적극 활용한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IP-DESK는 디자인권 침해 업체를 제재함에 있어, 법률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관할 세관과 연락을 취해 문제를 해결했다. 독일의 전시회에서 지재권 침해 업체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재권이 유럽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 업체가 독일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전시회 첫날 자사의 지재권을 침해한 업체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지재권 침해 업체를 발견한 경우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지재권 침해 제품 사진, 브로슈어 등). 세관 지재권 등록을 통한 지재권 침해 업체 모니터링은 가장 좋은 지재권 보호 방법이며, 이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한다.

### Q&A로 살펴보는 해외 지재권 Tip

#### 해외 지재권 무엇이 궁금하세요?

##### [대리상 명의로 중국에 상표를 등록했을 경우]

Q. A사는 무역회사인 B사를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B사가 중국 내에 A사의 상표를 미리 등록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❶ B사와 상표권 양도를 협의하는 방안 양도협의 후 상표국에 양도 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A사 명의로 상표권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표권 양도 관련 관납수수료 및 대행비용은 약 2,000위안이며 약 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2016년 기준)

❷ B사의 상표출원신청을 철회시키는 방안 단, B사가 상표출원신청을 철회하고 A사 명의로 신규출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B사의 출원신청 이후 A사가 신청하기 전 다른 기업이 유사상표 신청을 하였다면 A사의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❸ 이의신청하는 방안 초보심사 결정이 공고된 상표에 대해 공고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제기 신청 관납수수료 및 대행비용은 약 3,500위안이며, 결과발급까지 약 1년~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2016년 기준)

##### [PCT 출원과 중국에서의 활용]

Q. 한국의 특허청에서 PCT 출원을 하면 중국에서 사용하거나 중국기술인증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A. 한국의 특허청에 PCT 국제 신청을 하신 후, PCT 국제 초보심사 후에 두 번째 단계인 국가진출단계에서 중국단계로 진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에 중국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 [중국에서의 특허권 공동출원]

Q. 중국에 진출하여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는데 중국투자법인과 한국투자법인 공동출원이 가능한가요? 혹은 합작회사 설립 후 그 회사명으로 특허를 신청해야 하나요?

A. 상황에 따라 특허권을 단독보유 혹은 공동소유하시면 됩니다. 공동출원을 하든 합작회사를 설립 후 그 회사명으로 특허 출원을 하든 특허권의 경영권 및 소유권은 공동소유 됩니다. 따라서 기술 이전, 양도, 라이선스 등에서 모두 중국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작 초기에는 관계가 양호하나 사업 진행 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❷

글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 201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 자유무역 확산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 강화할 것

서울국제포럼은 2001년부터 한국이 개최하는 무역구제 분야의 대표적인 포럼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구제기관장이 함께 모여,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등 무역구제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중국·인도 등 세계 주요 15개국과 EU, EEC(Eurasian Economic Commission), WTO 등의 무역구제기관 대표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홍순직 무역위원회위원장, 국내·외 기업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메가 FTA

홍순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수요 침체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의 복원력(resilience)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경기불황 등 수요 감소로 특히 세계 철강시장이 공급과잉에 진입하자, 각국들이 철강 산업보호를 반덤핑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오늘 포럼에 참석한 반덤핑기관 수장들이 자국의 반덤핑정책이 공급과잉산업의 구조조정 왜곡 및 세계 교역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공정·투명한 반덤핑제도 운영에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호주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적극

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양자 FTA뿐만 아니라 TPP, RCEP 등 메가 FTA 추진도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이관섭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무역이 정체되고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이나 보호무역조치가 증가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각국의 공조에 의한 무역확대가 필요한 시기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무역구제조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반덤핑 조치 등이 세계 교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반덤핑 조치 협력 강화하기로

이번 포럼은 글로벌 저성장과 세계 교역 둔화, 철강·석유화학 공급과잉 등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2개 세션으로 개최되었다. 1세션에서 홍석우 前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성장과 교역의 둔화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있어 무역구제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① 보호주의 확산 방지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② 무역구제제도 운용의 공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③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을 통한 무역구제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를 제시했다. 2세션에서는 참석국가들의 반덤핑 재심 현황을 점검하고 원심 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산업피해의 지속 및 재발 가능성 등에 대한 각국의 주요 판단요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각국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판단 없이 재심을 통해 반덤핑 원심을 계속 연장해가는 것은 반덤핑제도 남용이라고 공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참석한 미국, 중국, 인도, EU 등 주요 무역구제기관장과 비공개 양자면담을 가지고 양자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우리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에 있어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위원회는 6월말에는 중국과 양자 무역구제협력회의를 개최하여 해외 수출현장에서 비관세장벽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주요 애로사항인 반덤핑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한 세계 교역을 위한 국제무역구제제도

### 덤핑방지관세제도

덤핑 수입으로 인해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가 판매량 감소 등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해외 수출자가 자국시장에서 판매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것을 말하며, 자국 시장에서의 가격과 수출 가격과의 차이를 덤팡마진이라 한다. 덤팡 수입된 제품이 국내 관련 업종의 제품 판매량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의 원인이 되거나 새로운 산업의 발전 지연의 원인이 될 경우 이에 해당한다.

### 세이프가드제도

특정 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동종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를 인상과 수입수량 제한 등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고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제도로 1995년 WTO출범 이후 대두유, 유제품, 자전거부품, 마늘 4개 품목에 대해서 세이프가드조사 실시 후 유제품, 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실시했다.

### 상계관세제도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제품이 수출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여기서 보조금이란 자국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있고, 재정적 기여에 의해 부여되는 혜택이 있으며 특정성이 존재할 경우로 정의한다. 수입물품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 지급행위가 존재한다는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은 덤팡방지관세제도와 동일하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품질·허위·과장 표시 등 경쟁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조사·판정하고,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하는 제도이다.❷

글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Vietnam]

## 베트남 TPP 체결에 의한 지재권 보호, 힘들어도 따라야



TPP 협정문의 지재권 파트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비전형상표, 특허등록 지연보상 등 많은 부문을 포함하며 높은 지재권 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TPP 등 베트남과의 무역협정 체결 국가들이 자국의 지재권 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베트남 내 취약한 지재권 보호 수준 및 개념은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지재권은 WTO 부속협정인 무역 관련 지재권 협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모든 FTA 협정체결 국가들은 베트남의 지재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를 요구해 베트남 지재권은 양적·질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

### 베트남 '온라인 지재권', '지재권 집행절차인 형사적 제재'가 가장 이슈

TPP 협상안의 지재권 파트는 전체 30개의 TPP 챕터 중 18챕터에 있고, A~K까지의 절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비공개 임상 자료 보호 의무', '온라인상의 지재권 보호', '지재권 보호 절차 강화'가 베트남 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재권 파트는 각 상표권, 저작권, 산업디자인, 지리적 표시, 산업 기밀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 집행 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TPP 협정문의 지재권 파트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비전형상표, 특허등록 지연보상 등 많은 부문을 포함하며 높은 지재권 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재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WCT(WIPO Copyright Treaty), WPPT(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등 주요 지재권 국제협약을 추가적으로 가입할 것이다. 베트남이 여러 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과 더불어 TPP 참여에 따른 지재권 보호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베트남 내 침해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외국기업들의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베트남 내의 사법기관이 항상된 특허보호 규정에 따른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실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만일 지재권 분쟁이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구에서 다뤄질 경우 베트남 기업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비용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 기업, 지재권 보호와 더불어 침해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국 기업들도 태만할 수는 없다. 베트남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지재권에 깨어 있고, 침해에 대한 실이 큼에 따라 당사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 빈중에 위치한 한국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소송을 당해 7억480만 동을 배상한 사례가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베트남 내 소프트웨어 침해로 인한 피해가 연간 2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며, 베트남 내 지재권 보호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의 지재권 보호 정책이 수준 높게 변화됨에 따라 한국 진출 기업들은 베트남 내의 지재권 등록을 통해 당사의 지재권을 보호해야 한다. 2015년 첫 베트남 특허 소송을 진행한 기업 또한 미국 기업이다. 침해행위에 대해 다국적 기업들은 강력한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olombia]

##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한·콜롬비아 FTA 조건부 승인

2009년 1차 협상을 개시한 한국과 콜롬비아의 FTA는 2013년 2월 최종 서명, 2014년 12월 상원 및 하원 비준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2015년 2월에는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개시를 공표했으며 3월에는 현재의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9월 현재 판결 결과 재판관 9명 중 1명이 불참한 가운데 한·콜롬비아 FTA 심의는 4대 4 가부 동수로 결론이 났다. 그리고 2016년 4월 14일,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한·콜 FTA 2차 심의에서 최종 합헌으로 결론지었으나 송금제한 조항에 대해 중앙은행의 자율권 침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3년 2월 광화문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FTA 서명식

### 현재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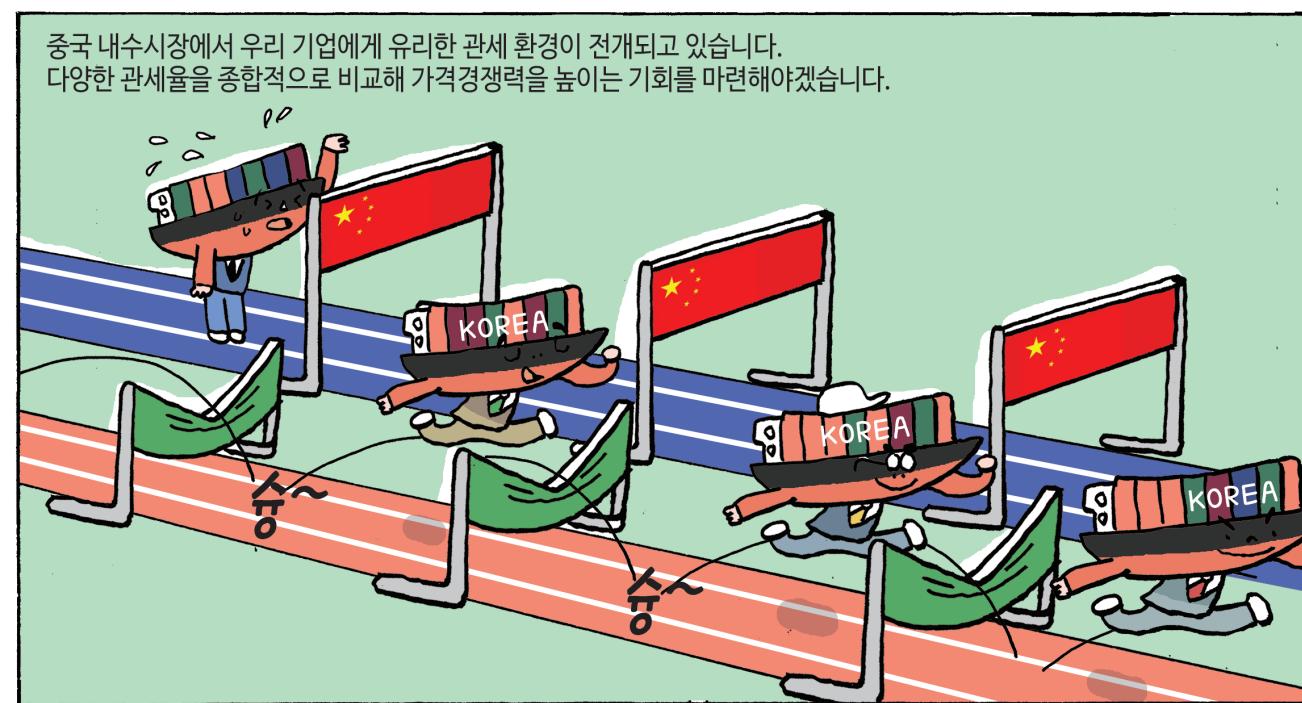
총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한·콜 FTA 합헌성 심의 결과, 양국 간 FTA는 기본적으로 합헌이나 부속서 8-다(내용 별첨 참조) 송금 관련 조항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건부 승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부속서 8-다에 포함된 송금제한(금융세이프가드) 관련 규정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명기한 콜롬비아 헌법 제371조 위배로 해석하였다. 송금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로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묶어두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중앙은행의 자율권 침해이며, 여타국과의 FTA에는 없는 특별 규정으로 현재 측은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은 한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한국 정부가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조건부 승인에 대한 입장 표명과 수락 여부 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FTA 발효 마지막 단계인 산토스 대통령의 한·콜 FTA 발효 재가 시 해당 내용을 공식화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중앙은행의 송금 제한에 시한은 없으며, 독립적 자율적 기관으로 국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무기한 송금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도록 명령했다.

### 우리 기업, 한·콜롬비아 FTA 발효에 대비해 시장 진출 전략 고려해야

El tiempo, Portafolio, El Espectador 등 주요 일간지는 콜롬비아 현재의 한·콜 FTA 최종 합헌판정 소식을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보도하는 분위기이다. 아울러 한국과의 FTA 발효에 따른 효과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수출 확대 전망에 대한 프로콜롬비아(Procolombia, 콜롬비아 무역투자관광진흥공사) 사장의 의견을 인용 보도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조건부 승인이라는 점과 헌법재판소가 어느 부분에 대해 조건을 내걸었는지에 대해 더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FTA 발효에 대비 콜롬비아 측의 연차적인 품목별 시장개방 플랜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콜롬비아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카툰 안종만

## 한·중 FTA로 한번! APTA로 한번 더!



## APTA & FTA

APTA란?  
한·중 FTA와 APTA 활용

정리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 아태무역협정(APTA)의 개요

## APTA 협정, 한·중 FTA 보완 역할 기대

지난 2015년 12월 2007년부터 8년간 이어온 제4라운드 APTA 협상이 타결되었다.

APTA는 중국, 인도 등 우리와 FTA를 맺은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무역협정으로 해당 국가와의 교역 시 두 협정의 차이와 활용한 대안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한·중 FTA의 보완효과로 기대되는 APTA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FTA와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 Asia-Pacific Trade Agreement)는 개념적으로 체약국간의 관세철폐 또는 양허를 통한 무역증진을 그 목표로 하는 국제 협정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면이 있으나, FTA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에 의하여 규정된 바에 따라 적용되며, APTA는 관세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 즉, FTA는 FTA특례법에 규정된 협정만을 말하며, APTA협정은 FTA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 규정을 따른다.

#### APTA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은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는 별도의 경제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어 중국으로 인정되지 않음),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등 7개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일반특혜무역협정이다. 지난 1975년 7월 타이의 수도인 방콕에서 서명되었고, 지난 2006년 9월부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으로 개정되어 발효되었다.

#### 4라운드 협상 타결로 더욱 넓어진 수출의 길

APTA 4라운드 협상이 논의 개시 8년 만에 타결됐다. 1975년 1라운드가 체결된 이후 세 차례의 상품 관세양허가 있었고, 2007년부터 4라운드 협상을 진행해왔다. 4라운드 협상에서 한국, 중국, 인도는 상품 관세를 평균 33% 인하하기로 했고, 관세양허품목 비중은 28%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른 회원국은 경제개발 단계를 고려해 33%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협상 타결로 반도체 제조장비, TV카메라 등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 1372개가 관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지난 2015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TA 4라운드 협상 결과 한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2794개 품목

에 대해 관세 33% 인하 혜택을 보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모두 1372개에 달한다. 이는 한국이 2012년 중국에 수출한 1667억달러 가운데 295억달러(약 17%)에 해당되며 내년 4월 최종 협상 타결과 함께 관세 33%를 즉시 인하하기 때문에 한·중 FTA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관세를 내리기로 한 품목으로는 TV카메라, 광학렌즈, 반도체 제조장비, 알루미늄 박, 건설중장비 부품, 무선통신 부품 등이 꼽힌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수출 품목의 원산지 증명이 더 간편해지는 쪽으로 바뀌었다. APTA 협정은 발효 즉시 관세가 줄어들므로 한·중 FTA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❷

참여국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총 7개국)

주요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5.7.31 : 방콕협정 체택</li> <li>▼ 1976.6.17 : 방콕협정 발효(제1라운드 시행)</li> <li>▼ 1984년~1990년 : 제2라운드 협상 및 시행</li> <li>▼ 2001.10월~2005.11월 : 제3라운드 협상, 중국가입('02.1.1 가입 발효)</li> <li>▼ 2006.9.1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으로 명칭 변경 및 제3라운드 발효</li> <li>▼ 2007.10.26 : 제2차 각료회의(서울), 제4라운드 협상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 이외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 및 비관세조치로 협상범위 확대</li> </ul> </li> <li>▼ 2009.12.15 : 제3차 각료회의, 몽고 가입신청서 제출</li> <li>▼ 2015.12.23 : 제4라운드 협상 타결 합의</li> <li>▼ 2016(예정) : 제4차 각료회의, 개정의정서 서명 및 제5라운드 개시선언</li> </ul>	<h4>원산지 규정</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 생산품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li> <li>● 불완전 생산 또는 획득물품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미상인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 가격이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고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이 행해진 상품 <math display="block">\frac{\text{비원산지 원료, 부품, 제품의 가치} + \text{원산지 미상의 원료, 부품, 제품의 가치}}{\text{본선인도가격}} \times 100 \leq 55\%</math></li> <li>● 누적기준 최종생산품의 투입물로서, 참가국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총 함유량이 본선인도가격의 60% 이상 차지하는 조건하에서 최종생산품이 작업 또는 처리된 참가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li> <li>● 직접운송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상 원산지 규정의 운송조건을 충족하고 일반적으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상품</li> </ul>

글 이민선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중 FTA와 APTA 활용

## 중국 수출 시

### 수출물품에 대한 협정의 선택 문제

현재 중국과의 수출에 대하여 2개의 협정이 적용 가능한데, APTA와 한·중 FTA가 그것이다. 이를 중 유리한 세율을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 한·중 FTA

##### APTA보다 관세혜택 부여하는 물품 범위 넓어

한·중 FTA가 올해로 발효 2년차를 맞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정보기술협정(ITA)의 확대, 잠정관세 등 다양한 형태로 중국 측 수입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다. 중국의 관세는 중국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를 통해 관보 형태로 제공되는 진출구세칙(进出口税则)에 명시된 세율에 따라 부과되는데, 한 품목에 대해서도 최혜국(MFN)세율 및 잠정세율, 한·중 FTA, APTA, ITA 확대협상 등 관세율이 각각 다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의 관세를 얘기할 때 APTA와 한·중 FTA를 빼놓을 수 없다. APTA와 한·중 FTA는 협정에서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협정대상 국가들 간의 무역거래에 있어 관세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들 협정에서는 HS 코드에 따라 관세율의 양허유형, 적용관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중 FTA는 관세의 즉시 철폐, 단계적 철폐, 양허 제외 등의 여러 양허유형을 보이고 있지만, APTA보다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물품의 범위가 더 넓다. APTA는 회원국들 간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저세율의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APTA의 추가협상이 작년 말에 타

결되었고 올해 안에 발효될 예정에 있어, 관세의 추가 감축이 있게 되며 일부 품목은 한·중 FTA보다 관세가 더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한·중 FTA의 경우에는 발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관련지침 등의 사항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와 관련된 지침의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FTA 적용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한·중 FTA와 APTA 활용 시 유의사항

한·중 FTA의 발효로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가 인하되어 무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과 기존 APTA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상황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한·중 FTA는 기본적으로 단계적 인하 또는 부분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기 철폐나 양허 제외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에 발효 년차별로 APTA와의 관세율을 서로 비교하여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품목의 경우 한·중 FTA 보다 APTA 양허관세 적용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

직접운송원칙, 해당 물품의 원산지 등 큰 틀에서는 한·중

#### 스테인레스 냄비의 연도별 세율 변동 비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한·중 FTA	10.8%	9.6%	8.4%	7.2%	6%	4.8%
APTA(중국)	8.4%	8.4%	8.4%	8.4%	8.4%	8.4%

FTA와 APTA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협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 및 발급서류형식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전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중 FTA와 APTA를 활용함에 있어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APTA와 한·중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정적용 대상물품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출물품이 협정대상 물품인지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즉, 수출물품에 대한 중국의 기본관세, APTA 양허관세율, 그리고 한·중 FTA의 양허조건과 관세율 변화 등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정확한 HS 품목 분류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중국은 수입기준 HS 8단위별로 양허 기준을 달리하는 품목이 많아 기존 HS 6단위의 같은 품목이라도 관세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품목분류를 중국 기준에 맞추어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 수출물품에 따라 APTA와 한·중 FTA 중 1개의 협정만이 적용되거나 2개의 협정이 모두 적용되는 물품일 수 있다. 2개 협정이 동시에 적용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는 어느 협정의 관세율이 더 낮은지 검토하여 관세혜택이 큰 협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세안용 미용 비누(HS3401.11호)는 2016년 현재 중국에서 기본 MFN 세율 10%, APTA 8.3%, 한·중 FTA 8%를 운용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비누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 가장 낮은 세율인 한·중 FTA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스테인레스 냄비(HS7323.93호)의 경우를 살펴보자. 중국의 2016년 관세율을 보면, MFN 세율 12%, APTA 8.4%, 한·중 FTA 9.6%(양허유형: 10년에 걸쳐 균등철폐)가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기준에서는 한·중 FTA보다는 AP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이후 한·중 FTA의 단계적 인하에 따라 APTA와의 연도별 세율을 비교해보면, 2016년 또는 2017년까지는 APTA 원

산지증명서 구비를 통한 APTA 8.4%의 적용이 유리하겠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관세율이 계속 인하되고 있는 한·중 FTA 세율 적용이 더 유리하게 되므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은 두 협정 간 관세율을 잘 비교해봐야 한다.

단순히 한·중 FTA 세율이 더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출입 통관서류를 구비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품목별로 기존 APTA 양허관세율과 한·중 FTA의 단계별 관세인하율을 연도별로 꼼꼼히 따져보는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APTA가 개정된 조건으로 발효하는 만큼 대 중국 수출기업은 변화된 관세율을 눈여겨봐야 한다. 한·중 FTA와 APTA는 각각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고,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협정들의 양허수준을 비교·검토하여 더 유리한 관세감축 효과가 있는 협정을 선택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하면 된다. APTA와 한·중 FTA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동일한 발급기관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이 아닌 타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적용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증명서양식을 정확히 확인하여 발급오류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한·중 FTA와 APTA 이외의 기타세율들

우리 수출 기업은 APTA, 한·중 FTA뿐만 아니라 중국이 매년 개신하고 있는 잠정세율, 발효 예정인 ITA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실제 소비재는 이미 일반세율보다 절반 가까이 인하되었으며 소비재 이외의 다른 품목들도 많이 낮아졌다. 또한 ITA가 발효되면 향후 중국의 수입관세가 3~5년 이내에 대부분 철폐된다. 한·중 FTA와 APTA는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야 관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중국의 잠정세율과 ITA 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듯 중국에서 관세 인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은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뒤 가장 유리한 세율을 골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❷



### TPP의 이 시각 현재 온도

## TPP 레이스는 이제 시작... 참여국 국내 반응은 여전히 천차만별

작년 10월 TPP가 공식 출범 10년 만에 전격 타결되고 이어 올해 2월 TPP 협정 공식 서명이 이루어지면서 TPP는 서명에 이른 세계 최초의 메가 FTA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TPP 협정이 각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지 않으면 이러한 의미는 무의미해진다. TPP의 긴 레이스는 이제 시작이다.

TPP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FTA를 기억하기 힘들다. 그것은 TPP가 미국과 일본, 두 경제대국을 포함하고 이들에 더해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라는 점, 그리고 WTO의 표류로 근 20년간 다루지 못했던 무역 관련 분야까지 포용한 가장 선진화되고 가장 광범위한 통상 규범을 정립할 FTA라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WTO DDA의 기약 없는 장기간 표류로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많은 이들의 이목은 TPP 타결 한 달 후 공개된 협정문과 이어 2월 공개된 서명분 협정문에 향했는데, 총 30개 장(chapter), 부속서 포함 7,000여 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을 다루는 동시에 기존 FTA에서는 볼 수 없던 내용들이 많아 이러한 세계인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에 TPP 원(元)참여국에 들지 못한 국가들 – 특히 콜롬비아,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대만 등 – 은 곧바로 TPP 가입을 위한 사전연구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참여국의 국내 비준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상기 모든 내용에 실효성이 부여될 수 없게 된다. 12개국 전원이 국내 비준을 마쳐야 비로소 TPP가 발효될 수 있음을 이미 본지에서 설명한 바 있다(2016년 3월호 참고). 그러나 협상 동안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참여국의 TPP 서명 이후에 대한 온도 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TPP 주요 3개국(미국, 일본, 베트남)의 국내 현황(2016년 3월호 참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TPP 인식관(2016년 4월호 참고)에 대해선 앞선 원고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그 외 8개국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 TPP 국내 비준 예상 '다소 흐림'



TPP 타결 사이 정권 교체한 캐나다(보수당 → 자유당)는 협정 자체에 대해 반대는 아니지만, 지난 정권에서의 협상 과정에 대해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지난 정부의 TPP 혜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음과 투명성 부재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 비준 전에 철저히 그 내용을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캐나다 내 농업, 낙농산업 단체들의 반발과 우려도 여전하다. 이들의 강력한 로비 의지에 캐나다 내 비준 절차에 혐로(險路)가 예상된다. 멕시코는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일단 TPP를 환영,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대(對)멕시코 투자 확대와 이로 인한 고용 창출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누적원산지 규정 협상 당시 갈등이 심했고, 섬유산업 등 경공업 분야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TPP 내 새로운 생산 기지 후보로 부상하자 미국 시장 내 자국산 제품 점유율 변화예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역시 낙농업 분야의 반발도 적지 않아 TPP 비준을 앞두고 셈법이 매우 복잡하다. 평화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이 문제다. 워낙 제네릭 의약

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TPP 협정 이후 시장 축소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이와 관련한 중하위층 관련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고심(苦心)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원부국인 브루나이는 원유가격 하락으로 경제에 직격탄을 맞아 TPP를 통한 반전에 많은 기대를 모을 법도 하지만 국가 자체가 원유 외 뚜렷한 수출품목이 없고, 국가적으로 공공분야에 대해서만 주력하다 보니 외국인 투자 유치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 TPP에 대하여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 TPP 국내 비준 예상 '맑음'



농업 분야 수출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칠레는 이번 TPP를 반기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일본 등에 자국산 농산물이 수출될 것에 대한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특히 농업과 임업 분야에서 그간 보호주의 정책을 펼쳤던 바, 칠레 입장에서는 TPP로 인해 굳게 닫혀있던 빗장을 열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 셈이 되었다. 특히 국민 소득이 높고 식료품에 대해 지출을 아끼지 않는 일본인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한 WTO 정부조달에 미(支)가입국으로써 이번 TPP를 통해 참여국 간 조달 시장에서 왕성한 경제활동을 꿈꾸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TPP 참여국 모두와 FTA를 맺어 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협정의 발효에 대한 기대가 결코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바로 이 점 덕분에 TPP 협정 비준 처리에 대한 국내 반응도 크게 적대적이지 않다. 이번 협정을 통해 보다 발전된 규범이 가능해지고, 역내국 간 생산 및 교역 네트워킹과 중개성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어서 기존의 무역 허브 역할이 더 견고해질 전망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우선 TPP 내에서 저장소(the Depository)로써 역할이 크고, 기본적으로 아태 지역에 대해 개방형 교역 태도를 보이고 있어 TPP로 인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어 있는 분위기다. 캐나다가 낙농업 분야에 대한 우려가 큰 것과는 반대로 뉴질랜드는 자국 낙농업 산업과 더불어 화훼 등에 대한 시장 확대에 TPP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협정 발효 시, 관광산업 및 서비스 산업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주 역시 뉴질랜드와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수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마당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호주는, 가장 중요한 교역파트너들이 대거 TPP에 참여하고 있어 역시 낙농산업, 식품, 서비스 등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 중국 교역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TPP에 올인하는 것에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TPP 국내 비준에 큰 난관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 TPP 최종 발효 전망 '안개 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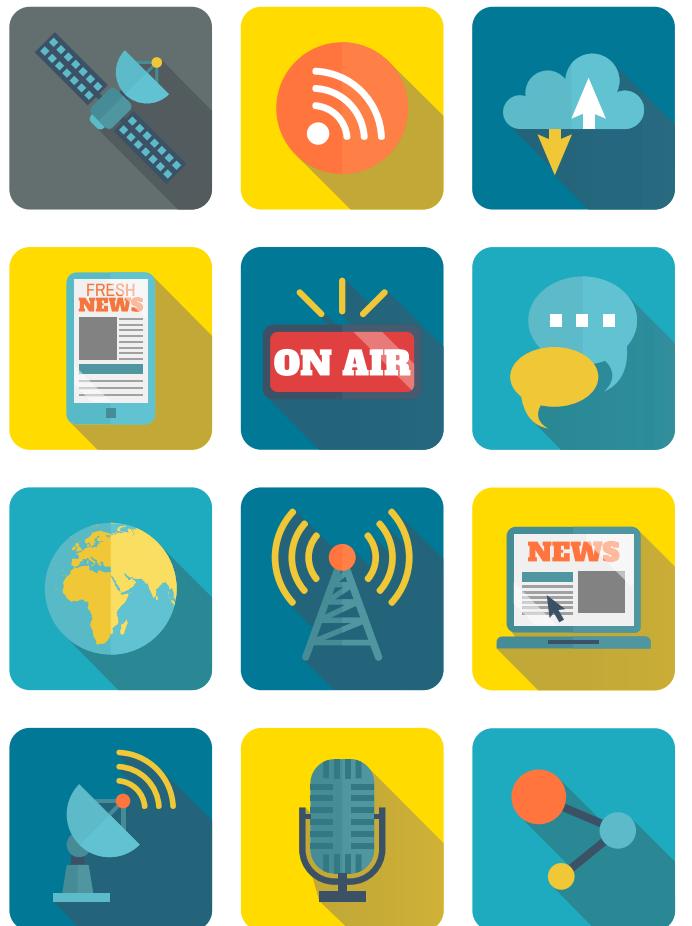
TPP 협정이 발효되려면 12개국 전원이 서명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 비준을 마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법이나,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국의 온도 차가 심해 조속한 발효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협정문 상에서는 2년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발효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원참여국들이 TPP 협정 발효의 마지노선을 서명 후 약 2년의 기준으로 자평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국이 자국 내 이해관계를 잘 설득하는 것이 TPP 협정 최종 발효를 위한 선결조건인 동시에 당면과제로 보인다. ☐

정리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 II) 발효

## 양허제외·장기철폐 품목 많은 FTA 체결국가에서 수혜 기대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 II)이 지난 2015년 12월 17일 타결되어 정식발효를 앞두고 있다. ITA II 타결품목의 전 세계 무역액은 1.8조 달러로 전 세계 수출액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기업은 FTA 미체결국가는 물론 FTA 체결국가에서 ITA II 수혜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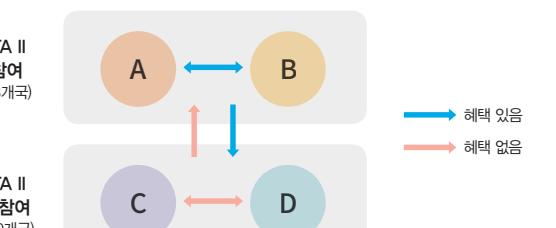


최근 한국무역협회 이근화 연구원이 발표한 '개정 정보기술협정(ITA II) 발효 및 시사점' 보고서에는 ITA II의 개요와 ITA II 품목의 무역현황, 주요 참여국의 ITA II 양허내용 및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 기술하며, FTA 체결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ITA II 관세 철폐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ITA II 타결품목 전 세계 무역액의 10% 차지

53개국이 참여하는 WTO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 II)이 2015년 12월 17일 타결되어,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다. ITA II 참여 53개국은 WTO 가입국 모두에게 ITA II 관세철폐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비참여국은 자국시장 개방의 무가 없다. 한국의 경우 수입 시 WTO 전 회원국에 ITA II 관세혜택을 부여해야 하나 수출 시에는 52개 참여국에서만 ITA II 관세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ITA II는 참여국의 국내절차 완료 및 발효조건 충족 시 금년 7월 1일 발효하며 품목별로 즉시(전체 품목의 65.3%) 또는 최장 9년간 균등 철폐할 예정이다.

### ITA II 국가별 관세혜택 비교



자료 WTO, ITA 타결 선언문

### ITA II 국가별 관세혜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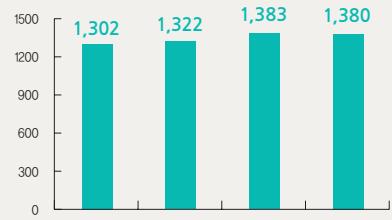
자료 WTO, ITA 타결 선언문

ITA II 타결품목의 전세계 무역액은 1.8조 달러로 전세계 무역액의 10.2%를 차지하며 ITA II 품목의 전세계 무역액은 지난 3년간 연평균 2.1% 증가하여 세계 총 무역 증가율(0.5%)을 상회한다.

한편, ITA II 참여국의 타결품목 수출액은 1.4조 달러로 전세계 ITA II 품목 수출액의 73%를 차지했다. 한국의 경우 ITA II 품목의 전세계 수출은 857억 달러이며, 이중 ITA II 참여국에 대한 수출은 713억 달러로 참여국 수출비중이 83.1%에 달한다. 한국의 ITA II 참여국 전체 수출액 중 ITA II 품목 수출비중은 18.4%이며, 지난 5년 간 연평균 4.7% 증가하여 전체 품목(2.6%)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ITA II 참여국 중에서는 중국, 홍콩, 미국, EU, 일본,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많은 편으로 특히,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와 홍콩에 대한 수출액이 지난 10년 간 연평균 20% 이상 증가했다.

### ITA II 참여국 타결품목의 대세계 수출액

(단위 십억 달러)



주 대만, 리히텐슈타인 제외 자료 UNcomtrade

### ITA II 품목의 전세계 수출액\*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0	2012	2014	연평균 증가율**
전세계 수출액(a)	14,899	17,834	17,951	0.5
ITA II 수출액(b)	1,578	1,729	1,827	2.1
(b/a)	10.6	9.7	10.2	-

\* 대만, 리히텐슈타인 제외 \*\* 2011~2014년 기준 자료 UNcomtrade

### FTA 체결 국가의 ITA II 양허내용과 전망

미국과 EU는 ITA II 양허품목의 FTA 협정세율이 이미 무관세로 전환되어 ITA II를 통한 추가적인 관세 혜택은 없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한·아세안 FTA는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을 중심으로 관세혜택이 예상되며, 이미 관세가 철폐된 품목도 ITA II 적용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아세안 FTA에 의해 관세가 철폐되지 않은 TV·라디오 수신기기, 연결부품, 기체용 여과기 청정기 품목에서 ITA II 효과가 가능하다. 또한 한·아세안 FTA는 복잡한 통관절차로 인해 FTA 수출 활용률이 타 FTA에 비해 저조하여 통관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ITA II를 활용한 경우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중국의 경우 한·중 FTA의 장기철폐 또는 양허제외 품목의 경우 ITA II에 따른 추가적인 관세철폐 효과가 예상된다. 중국의 ITA II 양허품목은 2023년까지 관세가 철폐되어 한·중 FTA의 10년 이상 장기철폐, 부분철폐(PR-N), 양허제외 품목의 양허수준을 상회한다. 이번 보고서는 ITA II 타결·발효를 계기로 향후 1.8조 달러에 달하는 전세계 ITA II 품목의 무역액이 확대될 것으로

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과거 1997년 ITA I 발효 후 양허품목의 전세계 무역액은 연평균 11.5% 증가하며 전 세계 IT 제품 무역확대에 기여한바 있다. ITA I 양허품목 교역량이 1997~2005년 중 11.5% 증가하여 전 세계 교역증가율 9.2%를 상회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ITA II 참여국 수출에 대한 타결품목 수출증가세가 전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여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 관세철폐 품목 수출 시에도 동 품목이 ITA II 타결품목인 경우 원산지 증빙이 필요 없고 바이어 요청과 관계없이 관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대만 등 FTA 미체결국의 유관세 품목과 기체결 FTA 중 한·중, 한·아세안 FTA의 장기철폐 및 양허제외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철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TA II는 FTA협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며, 특히 한·중 FTA의 경우 장기철폐, 부분감축, 양허제외 품목 수출 시 ITA II 협정세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경우 ITA II 발효로 금년에는 반도체제조장비, 전기계측기, 의료기기, 2017~2018년에는 액정디바이스, 자동제어기, 광학기기, 진공펌프 등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장의 목소리

## FT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 활용지원센터는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다양한 문의사항을 상담해준다. 센터를 통해 기업들이 가장 자주 묻는 FTA에 관한 중요 질문과 답변을 모아봤다.

**Q 한·싱가포르와 한·아세안 FTA 중 어떤 게 좋을까요?** 싱가포르로부터 기타 화학품(HS CODE 3824.90)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싱가포르와는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되었고, 또한 싱가포르는 한·아세안 FTA 체결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어떤 FTA를 적용해야 하나요?

**A** 싱가포르는 2006년 3월 2일에 한·싱가포르 FTA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아세안 6개국(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과는 2007년 6월 1일에 한·아세안 FTA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경우 한·싱가포르 FTA와 한·아세안 FTA 협정 둘 다 적용되며 이러한 경우 수입자가 유리한 쪽으로 협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즉, 협정세율이 보다 낮은 협정으로 적용하면 되는데, 다만 한·아세안 FTA와 한·싱가포르 FTA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상이하므로, 적용하고자 하는 협정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Tip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증명서로는 한·싱가포르 FTA 협정 적용신청만 가능하며,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CEPA, APTA가 체결되었으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원하는 협정으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Q 해외 물류기지 물품도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주류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시아에 판매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 소재한 자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생산된 주류를 싱가포르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오포가 있을 때마다 싱가포르 자사에 연락하여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한·EU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A** 한·EU FTA 적용을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 및 원산지 요건, 형식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생산하여 싱가포르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EU FTA에서 정하는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FTA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입자가 수입통관 시 제3국 단순경유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즉, 단순 경유한 제3국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면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EU FTA의 직접운송규정을 살펴보면 단순경유는 단일 탁송화물(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합니다.)을 구성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고, 귀사가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단일 탁송화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경유를 입증하여도 한·EU FTA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인보이스상의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가 다릅니다.** 주로 다국적 회사와 수입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거래업체가 다국적 회사이다 보니 인보이스는 미국에 소재해 있는 본사에서 발행되고 물품의 생산국 및 선적국(태국, 페루, 인도)은 제각기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 인보이스 발행자와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가 매번 상이합니다. 이럴 경우 FTA 적용 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고, 체약당사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이 이루어져야 하며,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통관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처럼 선적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한 자가 인보이스를 발행할 경우에는 인보이스 상의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출자가 상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3국에서 인보이스가 발행됨으로써 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 확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동일성 확인은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따로 표기를 하는 방법과 원산지증명서에 따로 Remarks를 삽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Q 해외 인터넷쇼핑몰 구매 물품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미국회사가 미국에서 생산된 전동공구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여 한국으로 배송할 경우 한·미 FTA를 적용 받아 관세가 없나요? 그리고 이 경우 한·미 FTA 협정 적용을 위해 구비하여야 할 서류가 따로 있나요?

**A**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로 인하여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수입되는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건품으로서 미화 200불 이하(과세가격)에 대해 목록통관대상으로서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구 분	현 행	미국발 특송화물 (자가사용물품, 상용건품)
신고 방법	목록통관	미화 100불 이하 [물품가액] 미화 200불 이하 ※ 목록통관대상인 경우 200불 까지 관세면제
	간이신고	미화 100~2,000불 미화 200~2,000불
	일반수입신고	미화 2,000불 초과 미화 2,000불 초과
	소액면제 기준금액	15만원 15만원*

\* 미국발 특송화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의 소액면제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15만원)

\* 그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 해당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등 특송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동일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등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의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 통관하여야 한·미 FTA가 적용 됩니다. HS code 8467.89~9000

: 기타 수자식 전동공구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현재 기본수입 관세율은 8%이고, 한·미 FTA를 적용 받을 경우 0%의 협정세율이 적용 됩니다.

**Q 원산지증명서의 HS 코드 그대로 될까?** 미국으로부터 계측기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상의 세번은 제9030.40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신고하려는 세번은 제9030.39호입니다. 해당 세번의 관세율을 확인해보니 제9030.40호로 신고할 경우 WTO 협정세율인 0%가 적용되며, 제9030.39호로 신고할 경우 기본세율은 8%이고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0%입니다. 이럴 경우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상의 HS CODE에 따라 제9030.40호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결정한 제9030.39호로 수입신고를 하고 제9030.40호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도 한·미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HS CODE는 WCO HS협약에 따른 분류원칙에 의하여 분류되며, 분류원칙은 국가마다 동일하여 같은 품목인 경우 HS CODE 6단위는 수출국 및 수입국에서 동일한 체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제9030.40호의 경우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제9030.39호의 경우에는 기타의 전압·전류·저항 또는 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므로 해당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검토 결과 제9030.40호로 결론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시의 세번이 동일하여 별다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검토 결과 제9030.39호로 결론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시의 세번이 상이하여 관세청 지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제9030.39호 및 제9030.40호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특혜관세를 적용하나 사후검증에 의뢰되어 협정적용의 적정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

정리 김선녀 기자



### 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

## 한국의 기체결 FTA는 상대국 원산지 재료의 누적 모두 허용

FTA 원산지 누적조항은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FTA 역내 국가들 간의 생산 및 공정을 최종 생산국이 수행한 것처럼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생산 분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FTA 체결국 간 기존 역내 생산 공급망을 효율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자간 FTA 활용으로 기업의 글로벌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원산지 누적조항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박지은 수석연구원과 제현정 연구위원은 '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의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FTA 활용을 통한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 추진을 위해 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원산지 누적조항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누적조항에 대한 이해, FTA별 누적조항 챕터 현황에 대해 분석하여 그동안 원산지 누적조항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역내 생산 및 중간재 공급망을 촉진 시키는 역할

FTA 특혜 원산지규정은 법적으로는 FTA의 특혜 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결정방식을 규정한 근거조항으로, 경제적으로는 우회 무역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원산지규정이 미비하거나 너무 낮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FTA 체결국의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 비체결국의 우회 무역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FTA 원산지규정의 최적 수준은 무역 창출 효과는 증대시키는 한편, 원산지 증명 등에 따른 비용 및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상품의 관세가 높은 산업일수록 FTA 상대국을 통한 제3국의 우회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선호한다. 한편, FTA 체결국 간 기존 역내 생산 및 중간재 공급망을 효율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원산지 누적조항

이 활용되고 있다.

### 기체결 FTA에서는 양자누적 자주 사용

누적조항은 각국의 필요에 의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념을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누적의 다양한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 양자누적, 완전누적, 유사누적, 교차누적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은 누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FTA를 체결한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originating material)'를 자국의 생산으로 인정해주는 누적이다. 양자누적은 최종재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원산지를 획득(originating status)한 재료만을 역내산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역내에서 제조되었더라도 원산지를 획득하지 못한 비원산지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는 역외산으로 간주한다.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은 FTA를 체결한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originating material) 누적뿐 아니라 '비원산지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의 역내 공정 및 부가 가치 누적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FTA를 체결한 역내 전체가 하나의 영역(free trade zone)으로 간주되어 역내에서 사용한 재료, 수행한 공정 및 작업을 고려해 원산지를 판정하게 된다. 완전누적은 비원산지 재료일지라도 그 재료의 생산에 수행된 역내 공정과 부가가치를 모두 인



정하기 때문에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자사 생산품뿐 아니라 공급받은 모든 재료의 원가 및 공정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요구된다. FTA 참여국은 자국의 산업 및 생산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원산지 누적의 범위를 결정한다. 전통적으로 원산지 재료의 누적만을 인정하는 양자누적이 기체결 FTA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으며, 주로 GSP(특혜무역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에서 사용되었던 완

전누적 방식도 최근 들어 메가 FTA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국가들 간 FTA가 서로 복잡하게 얹혀있기 때문에 단일 FTA 내에서 (intra-FTA)의 누적뿐 아니라 다른 FTA 간(inter-FTA)의 누적을 인정하는 유사누적, 교차누적 등 다양한 형태가 고려되고 있다.

### FTA 활용 위해 누적 개념에 대한 이해 필요

한국의 14건의 기체결 FTA는 상대국 원산지 재료의 누적을 모두 허용한다. 칠레, 싱가포르, 폐루,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의 경우 원산지 재료뿐 아니라 공정(production) 누적까지 인정되는 반면 EFTA, 아세안, EU, 중국과의 FTA 등은 원산지를 획득한 재료만 누적이 인정된다. 독특하게 한·캐나다 FTA는 한국 혹은 캐나다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교차누적(cross cumulation)을 허용하고 있다. 누적조항은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이하 GVC)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 역내 누적을 허용함으로써 FTA 참여국이 역내 생산 네트워크에서 비교우위 산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원산지 사후검증 측면을 고려 시 생산에 사용한 모든 재료의 원가 정보 및 공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누적의 활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

누적조항 활용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해 업계가 다양한 누적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업계는 구체적인 활용모델 및 사후검증에 대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누적의 유형 요약

방식	한 개의 FTA 역내	복수의 FTA 상호간(inter FTA)	
		FTA간 원산지기준 동일	FTA간 원산지기준 상이
원산지 재료만 인정	양자누적	유사누적	교차누적
비원산지 재료의 역내산도 인정(공정 및 부가가치 인정)	완전누적	-	완전교차누적

자료 Ticon Development Consulting(2013)

### 한국의 기체결 FTA에서의 누적조항 비교

누적 유형	FTA
양자누적+일부 완전누적(재료 및 공정 누적)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양자누적(재료누적)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터키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양자누적+일부 교차누적(재료누적)	한·캐나다 FTA

자료 한국의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저자 분류

글 김선녀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연매출 7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태경식품은 끊임없는 노력과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2015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탐방: 태경식품(최우수상)

## 건강한 재료와 빠른 수출 전략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내수시장의 어려움을 해외수출로 극복한 태경식품은 광천의 이름난 김을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올리고 있다. 인종과 문화가 모두 다른 해외시장에서 한국의 김이 통했던 것은 바로 좋은 원조와 FTA를 활용한 발 빠른 수출 전략 덕분이었다.

서양인들도 우리의 김을 좋아할까? 나라와 도시마다 그 입맛은 똑같을까? 우리 김으로 해외시장에 나서면서 궁금했던 많은 질문들을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해결해나간 태경식품. 국내 김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였지만, 세심한 관찰과 노력으로 해외 시장에서 만큼은 광천 김의 위상을 가장 널리 알리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다.

### 세계인의 입맛에 맞춘 김

서해와 맞닿아 있는 충남 홍성군 광천읍은 예로부터 김과 새우젓으로 유명했던 지역이다. 광천은 하천에서 비롯된 이름이지만 하천이 해로로 이어져 있어 염수와 혼합된 바닷물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간척사업 이전에는 마을 입구까지 바다가 이어져 있었다. 지리적으로는 내륙에 있지만 광천이 바다를 재료로 한 식품으로 유명한 이유다.

김으로 유명한 이 지역 일대에는 김 공장만 수십 개가 있다. 그 중에서 광천을 상정리

에 위치한 '태경식품'은 지난 2009년 후발주자로 광천의 김 사업에 뛰어들었다. 기아자동차를 다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고향인 광천으로 내려온 이성찬 대표는 김 사업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로 사업을 시작해 사업 초반부터 내수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김은 이미 국내에 너무 많은 브랜드가 있어 경쟁은 치열하고, 수익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또 국내 시장에서는 메이커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마트 입점 등에서 어려움이 많아 초반부터 자연히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죠."

태경식품은 창립한 지 1년 후인 2010년부터 수출에 집중했다. 첫 수출 국가는 미국이었다. "보통은 교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김은 교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포화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의 본토인을 상대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한류 덕분에 한국과 한국 음식에 대한 서양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도 많은 역할을 했지만, 태경식품의 수출 전략에서 핵심이 되었던 건 서양인의 까다로운 입맛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었다. 이들은 바이어를 통해 시식과 설문조사를 거친 뒤 미국인이 좋아하는 '짠 맛'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김으로 가공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쳤다.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어렵지만 저희처럼 작은 기업은 소량으로 개별적인 맛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 결과 환경과 문화가 전혀 다른 각 나라와 도시마다 그곳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맞춤 김'을 만들어내었다. 태경식품의 전략은 통하였고, 그 뒤로 미국, 캐나다, 호주는 물론 독일, 스웨덴,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 유럽 국가까지 진출했다.

### 틈새시장을 활용하는 발 빠른 수출전략

태경식품은 어민들이 재배한 김을 수매해 2차 가공을 한 뒤 완제품으로 만들어낸다. 공장 안에는 1차 가공된 김의 이물질을 검사하는 기계에서 시작해, 참기름, 들기름, 맛소금 등을 이용한 조미 과정과 포장까지 이어지는 생산라인이 쉼 없이 돌아가고 있다. 하루 5톤 가량의 생산량을 자랑하며, 매일 같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식탁에 놓일 김을 만들어 내고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품질이에요. 나라마다 사람들의 입맛은 다르지만 '좋은 재료'에 대한 반응은 똑같습니다. 일단 원초가 좋고 그 후에 개별적인 맛을 내는 것이죠."

바다의 기후와 햇볕이 좋은 충청·경기 지역의 좋은 원초를 수매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고, 품질 좋은 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두 번째 숙제였다.

태경식품의 두 번째 과제는 FTA 활용으로 이어졌다. 현재 태경식품이 수출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과 FTA를 맺고 있어 FTA 활용은 필연적이었다.

"충청 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는 FTA 교육도 받고,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어요. 작은 규모의 회사이다 보니 전담하는 인력을 두는 것도 어려웠죠."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서류 작성이나 통관 등의 문제도 초반에 잘 정리해두면 나중에는 점점 수월해진다고 이성찬 대표는 말한다.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김 기업으로는 최초로 '할랄인증'을 받아 놓은 것도 지금 무슬림 국가로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 시장에서 무슬림이 차지하는 규모는 무척 큽니다. 특히 할랄인증은 필수가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그 유무에 따라 판매량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작은 기업이기에 가능한 맛에 대한 융통성, 경제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합리성 그리고 해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준비성까지 갖춘 태경식품의 수출 성과는 창립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국 역시 대도시 외에도 내륙 지방의 잠재력이 무척 큽니다. 한류에 대한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한 앞으로 개척 가능한 시장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가능성을 큰 기회로 만드는 태경식품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

1



2



3



1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진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에 자리하고 있는 태경식품 공장 2 어민들이 1차 가공한 김을 수매한 뒤 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3 공장에서 2차 가공을 거친 김들이 포장되고 있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도시 제네바에 위한 WTO 유치 과정에는 독일과의 치열했던 유치 경쟁 비화가 숨어있다.



## 독일 對 스위스

# 스위스 제네바 WTO 유치 비화(祕話)

본지 지난 호(2016년 5월호)에서 WTO의 '환상적인' 위치에 대해 칭송했던 바 있다. 당시의 말을 빌리자면 'WTO는 스위스 남서부에 위치한 스위스 제3의 도시 제네바에서도 특히 경관이 아름답다는 레만 호수 어귀'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WTO는 왜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배경에 독일과의 첨예한 대결구도가 있었음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알려졌지만 또 알려지지 않은 스위스 제네바의 WTO 유치 비화를 지금 여기에 공개한다.

2차 대전의 종전을 앞둔 1940년대 후반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는 미국의 의회 비준 실패 등을 이유로 설립이 무산 되었고, 이것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으로 그 명맥을 이어온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로부터 GATT는 스위스 제네바에 근거하여 다자협상 및 분쟁해결 역할을 지속했고, 이후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약 8년여의 긴 협상 끝에 1995년 WTO의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마침내 형성, 이에 이어진 고민은 과연 WTO를 어느 국가, 어느 도시에 유치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 제네바와 본의 WTO 유치를 향한 첨예한 대결 구도

당시 마지막까지 팽팽한 대결구도를 형성한 것은 기존 스위스의 제네바와 독일의 본(Bonn)이었다. 당시의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이 갓 통일된 상태로, 독일 내에선 수많은 갈등과 논의 속에 어렵사리 통일 독일의 수도를 과거 동독의 수도였던 베를린으로 확정한 상태였다. 이는 본이 원래 서독의 수도였고, 독일 통일에서 경제적으로 서독의 역할이 커움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에 더 큰 전통적,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공감한 양측이 내린 대승적 결정이었다. 이후 독일 내 정부부처를 본과 베를린에 이원화하여 일시 운영하였고, 부처들이 점진적으로 베를린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본의 WTO 유치 노력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했던 상대적 박탈감과 고립의 심경을 대변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94년 6월 23일과 24일, 스위스와 독일은 각각 대표단을 파견, WTO 준비위원회(WTO Preparatory Committee)에 그들이 기구 유치 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설비 및 특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자리를 갖는데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이 준비위원회의 만장일치 합의를 거쳐, WTO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에 추천 형태로 전달되게 된다. 당시 본은 서독의 수도였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대도시 프랑크푸르트에도 가릴 정도로 특색 없는 도시였다. 통일 독일의 베를린 천도, 그리고 WTO 유치에 앞서 시도했던 UN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과 UN아동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 유치 실패로 본과 인근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활력유지에 크게 낙담, 고민하고 있었던 본에게 WTO 유치는 절실했고, 절필(絶必)했다. WTO 유치에 성공할 경우, 다른 국제기구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본은 전망했다.

반면, 중립국 특수를 누린 스위스의 제네바는 이미 UN과 GATT를 유치한 상태였다. 전신인 GATT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WTO가 다른 곳에 위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제네바였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만약 WTO가 다른 국가, 다른 도시에 유치될 경우 다른 국제기구들도 그들의 위치에 대하여 재고민, 비슷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기구 유치와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탱되어온 제네바의 경제에 큰 타격을 초래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 국제기구 많았던 제네바의 최종 승리

당시 본과 제네바가 유치를 위해 엎치락뒤치락 내건 공약들이 새삼스레 흥미롭다. 독일은 WTO사무국의 무상편의 제공을 약속했다. 본에 위치, 독일 하원의원이 사용하고 있던 현 의회 건물을 베를린 천도 이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 그것인데, 그 이전까지도 장소 사용에 대한 무상 제공을 유치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물가가 지나치게 비싼 제네바 상주 WTO 창설위원들의 이사비용을 부담하

는 것은 물론, 면세와 외교관의 특권 제공을 약속했다. 스위스 측은 현 GATT 사무국 건물을 그대로 제공할 것이며 – 1년 임대료 5만 스위스 프랑(25만 US달러)면제 – 같은 건물에 위치한 UN난민기구(UN High Commission for Refugees, UNHCR)가 얼마 뒤 다른 건물로 이동하고 나면, 더 많은 공간이 제공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750명의 대표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회의실 설비, 40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추가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최빈개발도상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들에게 무상으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이후 해당 공약은 독일에 의해서도 유사하게 재차 약속되었던 바 있고 이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의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IMF나 세계은행을 비롯 현재 WTO에서도 최빈개발도상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그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그들의 UN과 WTO 관련 업무 처리 및 공조에 긴밀함을 제공할 수 있는 상기 공약은 꽤나 구미가 당기는 내용이었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독일과 비슷하게 하급 직원들에게도 외교관의 특권을 부여하며, 외교관 전용 면세점 개설도 약속했다.

치열했던 공약 경쟁과 수많은 로비에도 불구하고, 역시 기존에 UN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가 위치해 있었던 제네바는 떠나기 쉬운 곳이 결코 아니었나보다. 유치경쟁으로 치열했던 6월이 지나고 이어 7월 22일 개최된 예산 행정분과 위원회에서 WTO 준비위원회는 WTO 사무국 소재지를 스위스 제네바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GATT와 WTO의 정신에 맞게 만장일치로 결정된 내용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WTO가 있다.

참고로 본과 베를린 간의 거리는 600km로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에 1.5배 정도가 된다. 당시 본–베를린 정부부처 이원화 관계로 부처 및 공무원 간 소통 문제, 여기서 찾아오는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지연 및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저하, 찾은 출장에 의한 피로와 과다 비용지출 문제, 본 주재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여기서 발생되는 사기 저하 등 갖가지 문제가 발생했었다. 당시에도 두 기구의 본부는 지금과 같이 뉴욕에 위치해 있었고, 역시 뉴욕에 위치한 UN본부와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이유로 본 이전을 거절했다. 당시 30만 명의 제네바 인구 중 40%가 국제기구 근무 외국인이었다. 여담이지만, 당시 한국은 스위스 제네바를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❷

글 김기현 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사진 한국경제신문

## 한·중 FTA 비관세 장벽 이해 및 활용

# 의료기기 광활한 중국 시장 공략, CFDA 인증 획득이 최우선

선진국 대비 뒤늦게 성장단계에 진입한 중국의 의료기기 산업은 규모가 작은 반면 성장속도가 빠른 특징을 갖고 있다.

중국 의료기기 매출액은 2001년 173억 위안에서 2014년 2,556억 위안으로 연평균 2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 본토 의료기기 제조기업 수는 1.57만 개에 달하며, 그 중 20개 상장사의 2014년 매출액은 372억 위안으로 전체 시장의 14.55% 비중을 차지해 의료기기산업의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기술력이 낮아 첨단 의료기기분야에서 해외기업이 여전히 7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수출에 나서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중국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의 CFDA 인증 획득입니다. CFDA 인증은 쉽게 이야기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인증과 비슷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한때 우리나라 식품, 의약품 기업들은 미국 FDA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과거엔 미국 이 가장 큰 시장이었지만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한 뒤로는 CFDA 인증 획득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간혹 미국 FDA 인증은 물론 국제공인까지 획득한 기업들은 중국 CFDA 인증이 별로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 시장이 성장하면서 중국에 수출하는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CFDA 인증이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예상 외로 중국의 기준은 깐깐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러한 CFDA 인증은 중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CFDA 의료기기 대상품목 및 분류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1, 2, 3 등급으로 분류하며,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이 1등급이고 가장 높은 것이 3등급이다.

1 등급 – 일반적인 관리로도 그 안전성과 효과가 보장되는 의료기기

2 등급 –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제어가 필요한 의료기기

3 등급 – 인체에 삽입; 지지, 생명연장; 인체에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어,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반드시 엄격한 제어가 필요한 의료기기

## CFDA 의료기기 등록인의 조건

해외의료기기 등록신청 시,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 내의 지정기구를 그 대리인으로 하고, 그 대리인은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진다. 해외 제조업체는 중국 내의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기구나 중국의 업체에 의료기기 판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탁해야 한다.

- 생산기업으로부터 등록을 위임받은 자(혹은 업체)
- 등록 관련 법규, 법률 및 기술요구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자(혹은 업체)
- 제조업체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혹은 업체)

- 신청제품에 대한 전문지식, 제품기능 및 특성을 잘 숙지하고 있는 자(혹은 업체)

## 의료기기등록관리 방법 규정

중국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 제 16호로 2004년 8월 9일 발표 및 시행되었다.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와 맞물려 시행되는 규정으로, '행정허가법'에 따라 모두 9개의 장, 56개 조항 및 12개의 추가 항목으로 수정된, 의료기기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다.

## 등록 관리 대상 의료기기 범위

중국 내에서 판매 및 사용되는 의료기는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된 의료기는 시장 판매 및 사용이 불가하다.

## 의료기기 등록의 유형

- 신규 등록
- 만기 또는 변경 재등록  
(의료기기 등록증의 유효기간: 4년)
- 등록 변경

## 등급분류 관리 실시 요구

제품등급에 따라 관할 감독관리 기구에서 등록을 책임지고, 홍콩, 마카오, 대만 제품을 포함하는 모든 수입의료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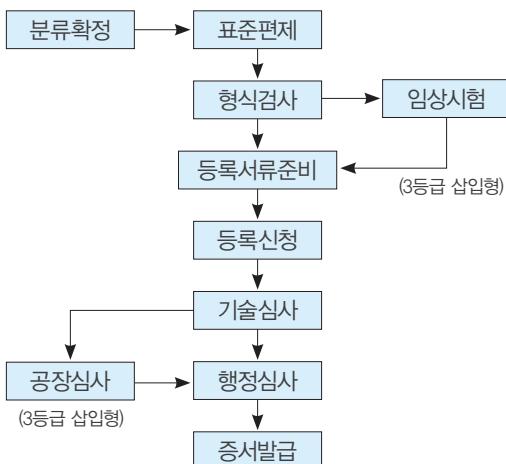
## 적용표준

등록 신청한 의료기는, 해당 제품에 적용한 제품 표준을 편제하되, 국가표준, 업종표준 혹은 기업자체의 제품 표준을 채택할 수 있으나, 기업자체의 제품표준이 국가표준이나 업종표준의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품질체계

2, 3 등급 의료기기 제품등록에서, 생산업체는 CFDA에서 규정한 생산조건 또는 상관된 품질시스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 등록절차



노령화 시대에 진입한 중국은 영상진단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4년 중국정부가 헬스케어산업을 전략적 추진 신종산업으로 지정함에 따라 의료기기산업은 폭발적 성장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헬스차이나' 전략, '13.5년' 발전규획안 및 '중국제조2025' 전략에서 모두 의료기기산업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향후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 한다. 이외에 정부는 첨단 수입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영상진단기기시장과 같은 해외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제품국산화를 우선적으로 추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인수합병을 통해 산업 집중도를 높일 것이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기업 M&A 추진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진출 희망업체 대응방안

중국시장의 진출을 위해서는 우선 중국 의료기기 시장에서 부각되는 제품, 시장동향,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수출제품의 전략을 세우고, 판매 전 미리 등록을 위한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의료기기를 중국 식약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가격의 전략적 책정 및 경험이 풍부하고 광범위한 영업력을 갖춘 판매 대리상의 적절한 선택이 중요하다.❷

글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⑬중국 지식재산권 계약 – 중국 OEM 계약

## OEM 계약 체결 전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상표권 확보해야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OEM 무역거래가 급속히 증가해 왔으며, 우리 기업들도 중국 OEM 무역 증가와 함께 성장해 왔다.

중국 OEM 무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 기업들의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나, 혼불리 하다가는 사업 기회를 잃거나, 손해를 보며 나아가 중국 OEM업체에게 많은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 우리 기업이 중국 OEM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리권·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상대 제조공장의 제품 품질 유지, 제3자의 권리침해대응, 해지에 따른 제품 처리 등의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주문자상표 표시부착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은 위탁자가 생산자에게 위탁자의 상표를 부착되도록 요구한 상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그에 따라 생산된 모든 제품이 위탁자에게 인도되어 판매되며, 계약에 근거하여 위탁자는 생산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협력방식을 말한다. 최근 중국 기업이 위탁자가 되어 우리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 기업이 위탁자가 되고 중국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므로, 여기에서는 우리 기업이 위탁자이고 중국 기업이 수탁자인 것으로 가정하여 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 1. 중국 OEM 계약 일반

우선 지식재산권의 측면에서, OEM 계약과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ODM) 계약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ODM 계약은 보통 판매망을 가진 유통 기업인 위탁자가 제품 생산을 위탁하면 수탁자가 스스로 제품을 개발·생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리권은 수탁자에게, 상표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제품이라도 그 제품이 OEM 또는 ODM 방식으로 생산되는지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OEM 또는 ODM 방식은 단지 계약 제목의 명칭으로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제품에 관련된 실질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 구별해야 한다. ODM 계약에 가까울수록 해당

제품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

중국 OEM 계약은 기본적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생산을 요구하는 제품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실사(사용, 이용)의 허락을 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목적으로 포함된 지적재산권에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중국 OEM 계약의 본 내용 외에도 구체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주서 및 품질 검사기준을 별도의 첨부서류 등에 기재할 수 있다.

### 2. 중국 OEM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 가. 상표권에 관한 내용

중국 OEM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많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상표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두어야 한다. 주로 상표 사용허가에 대한 특수한 계약을 OEM 계약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특수한 만큼 상표권 및 그 사용권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며, 사용방법, 표시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약정해야 한다. OEM 생산 제품(예를 들어, 화장품 등)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어떠한 권리보다 브랜드 이미지에 해당하는 상표권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상표권은 각 나라마다 등록하여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므로, 우리 기업은 중국 OEM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상표권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 나. 제품 품질 검사

중국 OEM 계약에 따른 제품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최종적으로 생산하여 납품하므로,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조한 제품의 품질 검



화장품 등 OEM 생산 제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어떠한 권리보다 브랜드 이미지에 해당하는 상표권이 가장 중요하다. OEM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많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상표권에 관한 권리관계는 명확하게 해두어야 한다.

#### 라. 제3자의 권리침해대응

OEM 생산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그 사이에 발생하는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제3자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일 것이다. OEM 계약 상 내부적인 책임과 역할 관계를 별도로 정하여 위탁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할 수 있다. 우리 기업과 중국 기업의 중국 OEM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다른 나라에 있는 섭외(涉外) OEM이므로, 해당 제품이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에서 제3자 권리 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예를 들어 한국 상표권은 확보하여 안심하였으나 동일한 명칭의 중국 상표권은 제3자에게 귀속되어 수출과정에서 제3자의 상표권 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 마. 해지에 따른 제품 처리

보통의 OEM 생산 제품에는 위탁자의 상표가 부착되므로, OEM 계약이 어떠한 이유로 해지가 되어 위탁자가 인수를 거절하여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탁자가 OEM 생산 제품을 전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항이 삽입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위탁자인 경우, OEM 생산 제품의 인수를 거부한 이유를 고려하여 그 전매를 허락해야 할 것인데, 예를 들어 OEM 생산 제품의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제품의 전매를 허락하게 되면 제품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 품질 하자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해지에 따른 제품 처리 시, 명시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조건의 경우에만 전매를 허락하는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글 유영웅 관세사(관세법인 네오)

### FTA 사후 검증tip: 효과적인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작성법⑤

## 검증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의문점 들지 않게 작성해야

지난 호까지 Chapter I과 II 부분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Chapter I에서는 수출 및 생산 당사자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제조능력을 위주로 설명하고, Chapter II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설명, HS Code 분류, 원산지결정기준, BOM, 제조공정 등을 검증요원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소명자료를 작성하게 된다. Chapter I, II 부분이 거래당사자와 물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라고 한다면 Chapter III 부분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으로 소명자료에서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보통 요청하는 자료만 만들어서 검증요원에게 보내면 검증에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 은데(물론 경우에 따라선 성공할 수도 있다) 검증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검증요원 입장에서 의문점이 들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소명자료의 서두와 본문에서 당사자와 물 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었다면 결론에서는 협정에서 정한 당사자 요건과 원산지결정기준, 충 분가공원칙을 충족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Chapter III가 바로 이 결론에 해당된 다. 이번 호에서는 Chapter III 부분에 대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Materials to Demonstrate Product Country of Origin under the UKFTA**

- I. About Exporter/Manufacturer)
- II. 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
- III.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Certification under the UKFTA**
- IV. Additional Information
- V. Evidence/References

**한·미 FTA 하에서의 물품의 원산지 소명 자료**

- I. 수출자 / 제조자 소개
- II. 검증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
- III.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IV. 추가 정보
- V. 관련 증빙자료

### Chapter III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Certification under the UKFTA

Chapter III의 목차를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았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목차를 세분화한 것으로 해당 내용만 포함된다면 축약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1. Exported Goods	1. 수출물품에 대한 기본 정보
2. Tariff Classification(HS Code)	2. 품목분류
3. Criteria of the Origin Determination	3. 원산지결정기준
4. List of Materials	4. 원재료 리스트
5. Decision	5. 원산지 판정
6. Result of Determination	6. 원산지 판정 결과

이 부분의 핵심은 검증 대상 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여 품목분류와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하고 원산지를 판정한 뒤 그 결과를 기재하는 것이다. 즉, BOM, 제조공정 등 요청서류만 제출하고 모든 것을 검증요원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품이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는 것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검증요원이 아닌 작성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최종 판단은 검증요원이 하는 것이지만 검증요원이 소명자료를 보면서 논리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두는 수입자에게 수출한 검증대상 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설명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 예시

#### Supplementary Explanation for the Origin Determination

We hereby determine that the goods(Invoice No. XXXX), which AAA exported in our Company located in [ADDRESS OF EXPORTER] and exported to [BBB] of U.S., on [DD/MM/YY], meet the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under the Korea-US FTA(UKFTA)

#### 1. Exported Goods (수출물품 기본 정보)

⇒ 수출물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hapter II에서 하였으나 검증요원을 위해 이곳에서 다시 간단하게 언급해주는 것이다. 또한 검증 대상 물품이 다양한 경우 물품별로 설명을 하여야 하므로 해당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예시

Name of Product : Baby carriages and there parts  
Model No. : 0000-000  
Invoice No. 00000000

#### 2. Tariff Classification (HS Code)

⇒ 검증 대상 품목에 대한 HS Code를 기재하고 물품에 대한 설명 및 품목분류가 이루어진 근거를 기재하여 품목 분류가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 번 상기 시킨다.

#### 예시

(1) Description of good(s)  
⇒ 물품에 대한 사진, 명세, 기능, 용도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2) HS Code : 8715.00  
⇒ 해당 품목에 대한 HS Code를 6단위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Tariff Classification  
⇒ 해당 HS Code로 품목분류한 근거에 대해서 기재한다.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았다면 해당 결정서를 참고하고,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관세율표 영문이나 해설서 영문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물품에 대한 설명은 Chapter I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중요 부분만 언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품목분류의견서 등 별첨자료를 참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참고 : “세계HS정보시스템”에서 관세율표 및 해설서, 품목분류 사례 등을 한글과 영문으로 제공한다.

① According to the Tariff Classification, the heading 8715 includes “Baby carriages and their parts”. This item is joined stroller front. The function of this good is protecting the baby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wind, rain, sunlight and so on.

⇒ 관세율표 4단위 제8715호의 용어에서 “유모차와 그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은 유모차 앞에 설치되어 아기를 바람, 비, 햇빛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② In accordance with Rule 1 and Rule 6 of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above goods are classified into the subheading 8715.00, because they were identifiable as being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baby carriages of this heading.

⇒ 해당 품목은 유모차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상기의 제품은 제8715.00호에 분류된다. ③

글 유영진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FTA활용지원실)

사진 한국경제신문

## 실전 FTA 활용 노하우: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 ②

# 원산지 신고서는 읽기 쉽게 영어로,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뉴질랜드는 우리의 전략적 FT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지난 호에서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관련된 부분과 원산지 신고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원산지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 3. 원산지 신고서(Origin Declaration) 작성 예시



####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부속서 3-다 원산지 규정 운영 절차에 대한 이행 약정〉

1. 이 장에서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이 이행 약정에서 규정된 형식을 따를 수 있다.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지침은 이 이행 약정에서 제공된다.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이러한 지침은 완성된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될 필요가 없다.
2. 특혜관세대우 취득을 위하여,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읽기 쉽게 작성하고 제3.19조에 따라 영어로 그리고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 송품장 방식 및 권고서식

#### ● 원산지 신고서는 8가지 요소 반드시 포함

(협정 제3.19조)

- ① 증명인의 성명·연락처
- ② 수입자(아는 경우)
- ③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 ④ 생산자(아는 경우)
- ⑤ 6단위 HS
- ⑥ 원산지규정
- ⑦ 원산지신고일자
- ⑧ 포괄기간(포괄증명인 경우)

#### ● 권고서식 : 협정 부속서 “3-다(예시 1, 2)” 사용 권장

예시 1 수출자, 생산자가 수출송장 또는 상품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송품장 등)에 영어로 작성

상업 서류에 기재할 문안	<p>I.....<sup>1)</sup> being the .....<sup>2)</sup> hereby declare that the goods enumerated on this invoice are originating from .....<sup>3)</sup> in that they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of the Korea-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p> <p>Observations: <sup>4)</sup> Signature ..... Date: .....<sup>5)</sup></p>
작성 방법	<p>위 원산지신고 문안을 송품장 또는 물품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이하 “송품장 등”)에 영문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p> <p>1) 작성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성명 및 직책을 기재. 필요한 경우, 신원확인 정보를 얻기 위한 상세 연락처를 포함할 수 있음 2) 수출자(exporter), 생산자(producer) 또는 생산 및 수출자(producer and exporter) 중 택일하여 기재 3)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 (the Republic of Korea 또는 New Zealand)를 기재 4) 비고(Observations)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 다만, 송품장 등에 이미 그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가. 물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나. 물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다. 물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Code)에 따른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마. 해당 물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기준 바. 원산지신고 일자 사. 협정 제3.19조제7항나호의 규정에 따른 포괄 신고의 경우에는 원산지신고 증명하는 포괄기간 5) 서명한 일자를 기재</p>

‘부속서 3-다’에서는 2가지 예시를 통해 원산지 신고서의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예시(EXAMPLE A)는 송품장 신고 방식에 대한 기재형식으로, 이에 대한 작성 지침을 따로 설명하고 있다.

원산지임을 선언하는 신고문안은 간단하지만, 비고(Observations)란에 협정에서 정하는 필수기재항목들이 추가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작성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비고’란 작성에 대한 구체화된 형식이 없어 작성 시 항목 누락 등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예시(EXAMPLE B)의 경우 상대적으로 형식이 자유로운 송품장 신고방식과는 달리,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한다. 1번(수출자 정보)부터 11번(비고)란 까지 작성하게 되면 협정에서 정하는 필수기재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할 수 있다.

송품장 신고방식에 비해 양식이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 FTA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정보가 누락될 위험이 적으며, 상대적으로 송품장 신고방식보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작성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작성이 용이할 수 있다. ‘EXAMPLE B’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print or type)로 쳐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예시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작성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송품장 등에 기재방식이 아닌 신고서 방식으로 작성하고자 할 경우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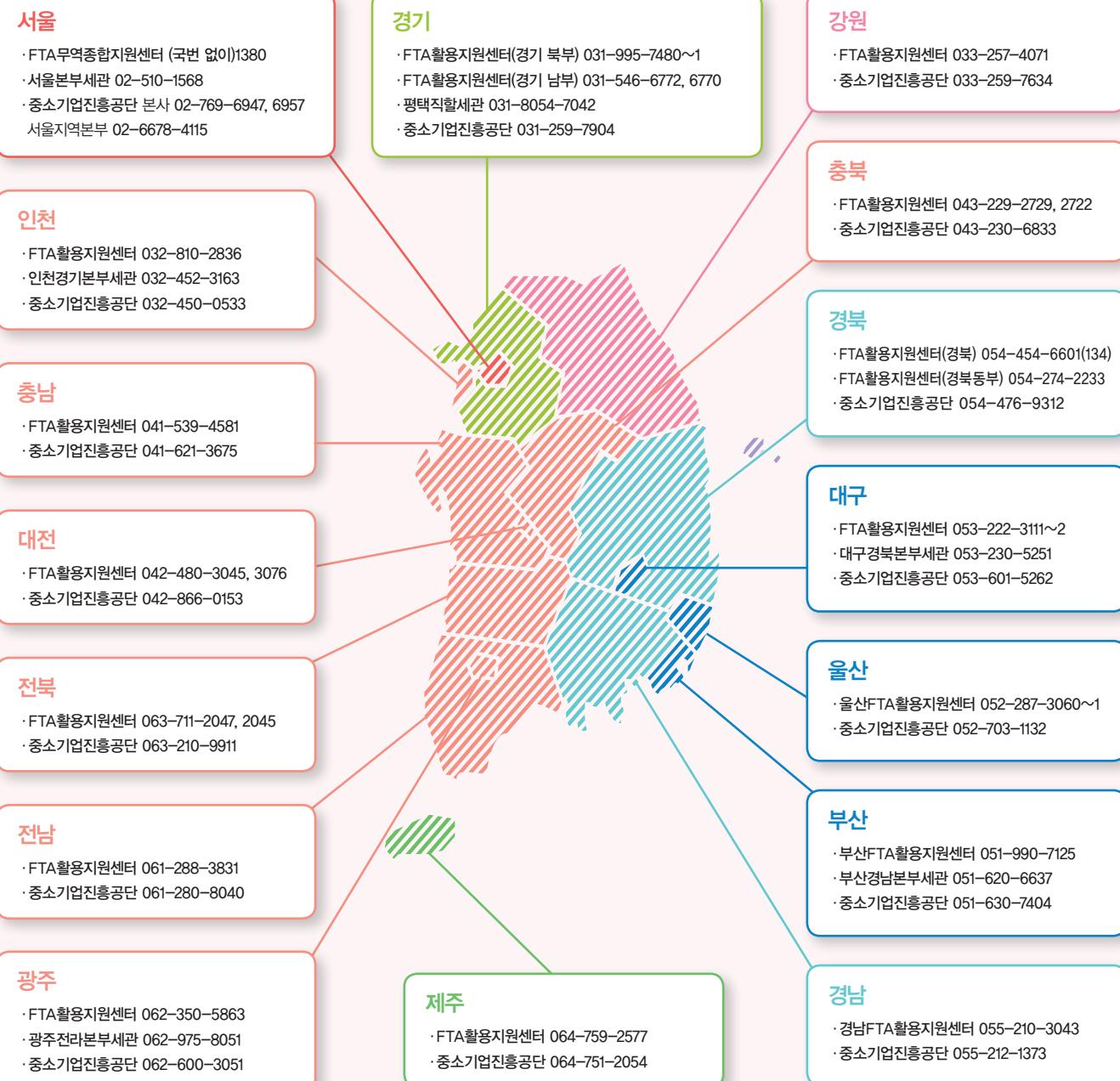
Origin Declaration 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2. Blanket Period:  Telephone:      Fax:      YYYY MM DD      YYYY MM DD E-Mail:                          From: / / / To: / / /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Reference No.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7. Preference Criterio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11. Observations:  I certify t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li> <li>-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declaration,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declar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declaration.</li> <li>-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li> </ul> <p>This declaration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p>									
12.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YYYY MM DD Date: / / /      Telephone:      Fax: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14서식]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 안내

#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TA는 바로 중소기업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FTA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FTA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글 최효찬 자녀경영연구소 소장(문학박사)  
사진 한국경제신문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⑩변신인형

## 이상은 현실을 개조하지만, 현실도 이상을 개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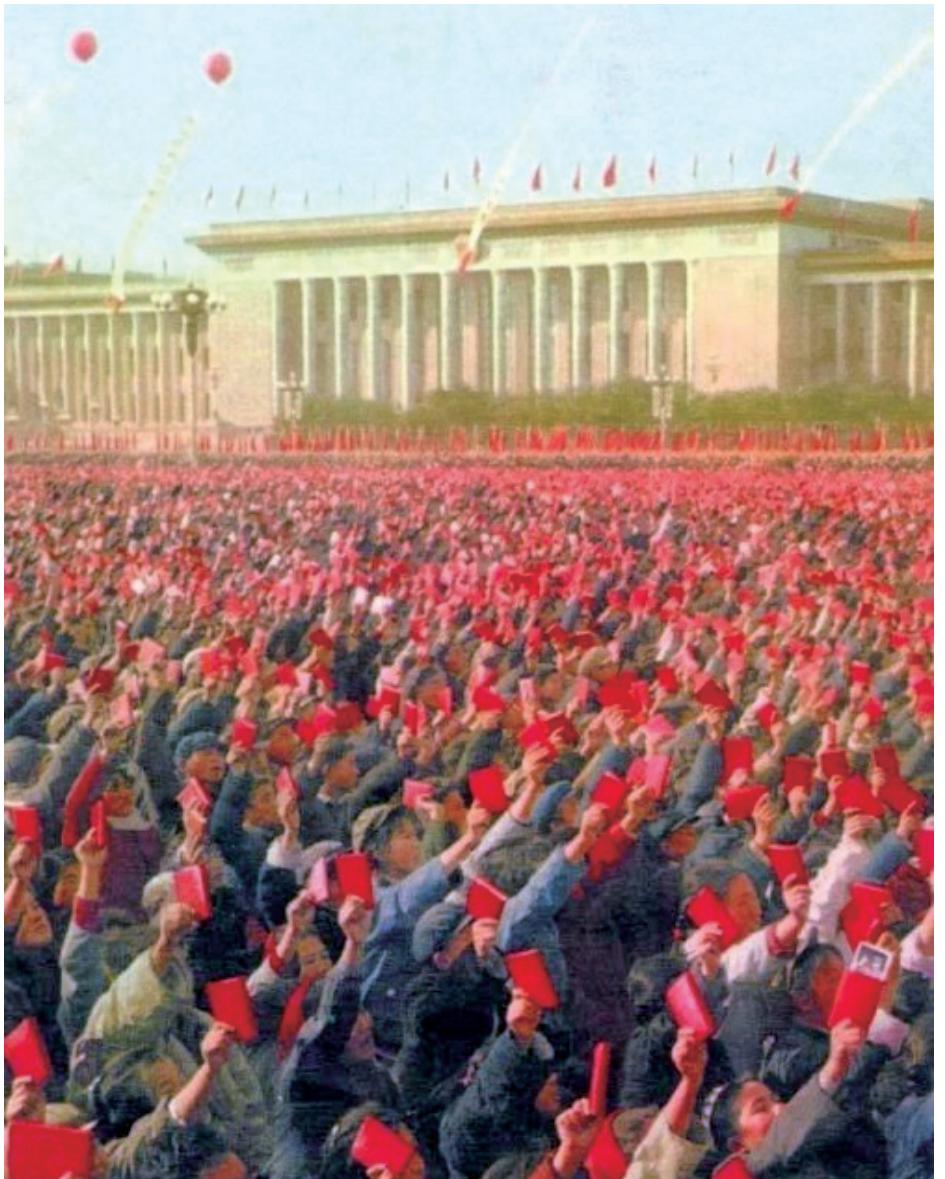
우리는 현대 중국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을까? 서구 출신 작가나 작품은 줄줄이 꿰면서도 중국 출신 작가와 작품은 어쩌면 루쉰(魯迅, 1881~1936)과 그의 '아큐정전' 정도가 고작이 아닐까. '세계의 굴뚝'이 된 중국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국가로 급부상했다. 그렇다면 중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중국 작가나 작품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중국의 봉건적 관습을 고발한 왕명의 소설

"20세기 중국 소설에서 두 작가를 꼽으라면 전반기의 루쉰과 후반기의 왕명 두 사람이다"

1987년 출간된 왕명(王蒙, 1934~)의 작품 '변신인형'을 번역한 전형준은 이렇게 평가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논어 등 중국의 고전들이 널리 소개되어 왔지만 현대 작가의 작품들은 루쉰 등 소수에 불과하다. 왕명 또한 국내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국의 대표적 지식인이자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작가이다.

왕명의 대표작인 '변신인형'은 1940년대 초 베이징 시내의 한 가정 이야기로 1980년 6월 독일에서 47세의 니자오가 과거 회상하는 형태로 서술된다. 그 회상의 주체는 아버지 니우청에 대한 이야기이다. 대학 강사인 니우청은 중국의 봉건문화를 혐오하고 서구 문명을 동경한 인물이다. 니우청의 집에는 아내 장징이와 과부가 된 장모 장자오씨, 과부 처형 장징전이 함께 살고 있는데 그는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나온



왕명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문화대혁명과 같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다 도리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중국 권력자와 중국인들에게 정치적 각성제를 주사하려고 했는지 모른다.



왕명(1934~)

1934년 베이징에서 태어났으며 1949년 신중국의 건국 이후 공산주의 청년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친작을 시작, 1956년부터 지금까지 활발한 창작 활동을 계속해왔으며 2000년 이후 여러 차례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것 같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소설 속에서 주인공 니자오의 젊은 시절을 통해 그러한 삶들의 폐기를 주장하며 이모와 외할머니를 반동분자로 고발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모는 니자오의 문학선생 노릇을 해주었던 존재였다.

### 끝없는 세월 누가 오셔서 우릴 구해주려나

이 작품의 제목으로 쓰인 '변신인형'의 의미는 상징적이다. 변신인형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아이들이 직접 알맞게 자신의 몸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난감이다.

"모든 사람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네. 그의 마음, 그의 욕망과 원망, 그의 환상, 이상, 추구, 희망, 이것들이 그의 머리지. 그의 지식, 그의 재능, 그의 자본, 그의 성취, 그의 행위, 행동, 인간관계, 이것들이 그의 몸이고, 그의 환경, 그의 지위, 그가 어떤 장소에 서 있는가, 이것들이 그의 다리지. 이 셋이 학목할 수 있고, 대체로 조화될 수 있고, 적어도 서로 융합할 수만 있으면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번뇌만이 있고 고통만이 있네."

자오상통은 이어 니우청에게 "자넨 뭔가? 자넨 그 알량하고 알짜한 장난으로 배도 못 채우고 처자도 못 먹여 살리면서, 그래 중화의 문명과 전통의 도덕을 멸시하는 건가?"라고 타박한다. "제대로 서지도 못하면서 무슨 문명이니 진보니 행복이니 혁신이니 저 하나의 힘을 내세우면서, 뜻만 크고 재주는 없고, 구름 속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그게 바로 야만이네." 자오상통의 이 말은 니우청에게 하는 말이지만 40년대 서구의 지배를 받는 중국인들의 우매함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끝없는 세월, 끝없는 세월/누가 오셔서 우릴 구해주려나."

이 소설에는 중국인들이 가장 즐겨 읽는 소설인 '홍루몽'에 나오는 한 대목이 인용되는데, 왕명은 바로 중국인, 바로 그들 자신만이 오래된 인습을 타파하고 중국을 구해낼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닐까.

이 작품이 그리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부정적인 모습 자체가 아니라 봉건적인 것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가, 어떻게 인간을 악으로 물들이는가 하는 것이다. 그 묘사는 한 가족으로부터 사회 전체로,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부터 여전히 봉건성에 침운되어 있는 사회주의 중국의 사회로, 더 나아가서는 20세기 중국 역사 전체로까지 확대된다.

"이상은 현실을 개조하지만, 이상은 반드시 현실의 노력을 통해 현실을 개조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도 이상을 개조한다."

왕명이 '작가의 말'에서 한 이 말은 이상과 현실의 관계를 논한 명문장이 아닐 수 없다. 삶의 모순이라는 현실을 배제한 이상이 실은 얼마나 인간을 억압하는 것인지를 고발하는 의미일 것이다. 왕명은 이 말을 통해 문화대혁명과 같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다 도리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중국 권력자와 중국인들에게 정치적 각성제를 주사하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왕명 자신도 23살 때인 1957년 반우파투쟁에서 우파분자로 낙인찍혀 하방당해 1973년까지 16년 동안 위구르로 유배당해 글을 쓰지 못했다. ☺

정리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 FTA NEWS



**한·이스라엘 통상 차관 면담**  
양국 협력방안 논의 및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개시 합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4일 이스라엘 경제부와 통상차관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합의하였다. 정부는 창조경제 모델 국가인 이스라엘과 경제 전반의 협력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하고 양국 관계를 한차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차관급 면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면담 시, 양 차관은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교역 투자뿐만 아니라 기술창업, 첨단산업, 농식품, 산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한·이스라엘 FTA가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을 동의하였다. 또한, 양 차관은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

를 위한 자국 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공유하고, 1차 협상을 오는 6월 27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FTA가 양국의 기체결 FTA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상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우태희 차관은 “한·이스라엘 FTA는 첨단기술, 창업, 농식품 등 협력에 초점을 맞춘 상생형 FTA 모델로서, 이를 통해 교역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강점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우 차관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AI, 무인항공기 분야)’, ‘웨이킹 앱(Waking App, 가상현실 분야)’을 방문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한·중미 FTA 제4차 협상 개최**  
중미 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 및 투자진출 확대



한·중미 FTA 4차 협상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과 중미 6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한국과 중미 6개국 간 FTA 제4차 협상이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온두라스 수도인 테구시갈파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중미측은 멜빈 E. 레돈도(Melvin E. Redondo) 온두라스 경제통합 통상차관을 수석대표로 중미 6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난 3월까지 4차례 협상(본협상 3회, 회기간 회의 1회)을 진행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높은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주요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금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통관,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재권, SPS, TBT 등 주요 분야별 협정문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했으며 특히, ①자동차, 섬유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②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③정부조달 시장 진출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우리기업의 对중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은 “한·중미 FTA를 통해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对중미 교역의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최근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미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수출 증대와 투자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하였다.

**중국 내륙시장 진출 위한  
릴레이식 한류상품박람회 개최**  
중국 내 재점화되는 한류 붐을 활용해  
중국 소비시장 진출기회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류가 재점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한국산 소비재 선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중국 동북·서부 등 새로운 내륙시장 개척을 위해 5월 12부터 21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한류상품박람회를 개최했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 ‘한-섬서성 경제협력협의회’를 개최하여 섬서성과의 협력채널을 재가동하는 등 중국 지방정부와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도 진행하였다. 이번 한류상품박람회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선양을 시작으로, 13일부터 17일까지 시안, 20일부터 21일까지 충칭 등 3개 도시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개최함으로써 다시 찾아온 한류 붐을 우리 소비자 서비스 마케팅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람회가 열리는 선양, 시안, 충칭은 2선 도시 중에서도 가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시로서 한류 확산과 함께 우리 기업의 진출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규모 면에서도 예년 대비 3배에 가까운 340여개 국내기업이 참여하고, 중국 바이어도 1,300여개 사가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이다. 우리 기업은 한류와의 연관성이 높고, 중국에서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소비재 기업 위주로 참여하였고, 중국은 타오바오, 해피고, 부부가오(중국 호남성의 양대 전자상거래업체), 창춘유라시아(동북 3성 최대 유통업체), VIP.com(중국 3대 쇼핑몰) 등 유력 유통바이어들이 대거 참여했다. 주 장관은 그간 ‘소비재수출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 방식, 지역, 주체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금번 한류상품박람회는 최근 한류 열기가 뜨거운 중국에서 이러한 변화된 방식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행사로서, 주장관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 우리 기업을 지원하였다.■



## Information

## 〈2016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신청 안내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에서는 중소·중견 무역업계의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신 후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사업 목적 |

- 한·중 FTA 활용 시 장애요인 제거를 위해 기초적 한·중 FTA 활용실무(품목분류, 원산지 증명서발급요령 등)뿐만 아니라 중국비관세장벽(인증, 지식재산권) 대응 컨설팅 제공

## | 사업 개요 |

- 사업명 2016년도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 사업기간 2016년 3월 ~ 10월
- 지원대상 전국 중소·중견기업 120여 개 사(업체당 총 4MD(man day)限, 약 200만원限)
- 지원방식 수요자 선택형 종합 컨설팅
  - FTA 활용 교육(1일)을 필수로 이행하되, 이 외 분야는 업체당 지원일수 한도(4MD) 내 수요자가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컨설팅

## | 지원 컨설팅 분야 및 내용 |

구분	명칭	지원 내용	지원 규모
필수	FTA 활용교육	한·중 FTA 활용 기초내용 지원업체 현장방문 실무교육 *원산지 규정/적용, FTA 활용절차	1일(MD)
	FTA 실무	업체별 맞춤형 FTA 활용실태 진단, 원산지 판정, 품목분류 지원 등	1일(MD)
선택	중국 인증	중국 주요인증 취득 컨설팅 * CCC, CFDA, CQC 등 중국 수출 시 필요한 인증 전문야 대상 * 컨설팅 시행 기관에 인증 취득 신청 시 비용 할인 연계	2일(MD) 이내
	중국 지자권/ 계약서 작성	중국 내 특허/실용신안/상표권 신청 절차, 바이어와의 계약서 작성 컨설팅	2일(MD) 이내

\*업체분담금 비율에 따라 컨설팅 내역별 지원금액은 상이

## | 참가업체 분담금 | (2015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상이)

매출액	50억 이하	50억 초과~500억 이하	500억 초과
분담금	무료	10%(최대 20만원)	20%(최대 40만원)

## | 신청 방법 |

- URL 접속 후 온라인 신청 <http://okfta.kita.net>

## | 문의처 |

- 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 이메일 chinadesk@kita.net      • 전화 02-6000-7607, 4992



##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흑마늘이 세계시장에서도 인기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통용이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늘이 가공되어 안전한 먹거리로  
세계적 인정을 받으니 중소기업이  
강해지는 지름길이 FTA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윤술**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한·멕시코 FTA의 필요성'의 기사를  
읽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멕시코를  
순방했는데 그게 왜 중요하고,  
필요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와의 협정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서은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번 우리 회사에서 BR 자재를 수입하던  
중 원산지 문제로 인하여 세관에서  
제조공정도를 요구하였는데, 5월호에서  
제조공정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가이드북으로 참조,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류광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그동안 중국과 미국에 대한  
국제무역만을 편중하여 생각해  
왔습니다. 국제 경기의 침체에 따른  
대안으로 멕시코를 통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주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해외직구를 즐겨하는  
1인으로서 중국 관세에 대한 설명은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사공권** 경기도 이천시 애현정로

# 함께하는 FTA

June 2016 / vol.49 [www.fta.go.kr](http://www.fta.go.kr)

## 알림

독자엽서를 이메일로도 받습니다.  
보내시는 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엽서의 질문 답변  
내용을 적어서 agami2@korea.kr로 보내주시면,  
좋은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존처럼 우편엽서로 보내셔도 됩니다.

함께하는 FTA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E-mail

□□□□□

독자엽서



받는 사람

〈함께하는 FTA〉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3 0 1 1 8

〈함께하는 FTA〉는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열린 공간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함께하는 FTA〉를 만들어가는 에너지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6월 24일까지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FTA〉를 보신 소감은?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는 무엇이었나요?

이유를 적어주세요.

〈함께하는 FTA〉를 어디에서 보셨나요?

예) 은행, 관공서, 도서관 등

〈함께하는 FT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또는 FTA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정기구독(무료) 신청을 받습니다.

신규 독자 신청 또는 기존 독자 주소 변경은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agami2@korea.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호에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아래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함께하는 FTA〉 5월호  
독자 이벤트 당첨자 명단

사공권 경기도 이천시 애倫정로  
김보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서은영 경기도 용인시 수진구 신수로  
이윤슬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류광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조혜연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김지현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안용순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강선미 광주시 북구 두암동  
우향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독자엽서 당첨상품 반송 시 1년 간  
(우체국 배송자료 보관 시한) 보관합니다.

# NEW STAY

새로운 주거문화의 시작

## 아이는 즐겁고, 엄마는 걱정없어요

분양주택 수준의 새집에서 8년 동안 안심하고 살게 됩니다

- 8년간 내 집처럼, 이사 걱정없이 오래오래
- 연 5%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 임대료 부담없게
- 육아, 청소, 교육 등 토탈 주거 서비스로 편리하게
- **연말까지 12,000호 모집**  
(서울, 인천, 대구, 수원, 화성, 진천 등)

[www.molit.go.kr/newstay/](http://www.molit.go.kr/newstay/)



#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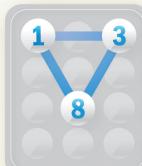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가공해 제공